

노동자 김진숙 명예회복 및 복직을 위한 긴급 국회토론회



- **일시** : 2021년 1월 21일(목) 오후 2시 ~ 5시
- **장소** : 참여연대 아람드리홀
 - ※ 코로나19 국회 방역지침에 따라 장소를 옮겨 진행합니다.
 - ※ 본 토론회는 <뉴스타파>를 통해 생방송 됩니다.

-
- **1부** : 노동자 김진숙의 증언 및 입장
 - **2부** : 종합 토론회
 - ※ **사회** : 정강자(참여연대 공동대표)
 - ※ **발제1** : '소금꽃, 노동자 김진숙'의 명예회복과 복직의 사회적 의미
송경용(신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회연대위원장)
 - ※ **발제2** : 노동자 김진숙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헌법적 책임
오동석(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 **지정 토론**
김소연(비정규노동자의집 꿀잠 운영위원장, 리멤버 희망버스 운영팀장)
박래군(인권재단사람 소장)
박승렬(NCK인권센터 소장, 4.16연대 상임운영위원장)
조영선(민변 부회장, 전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

-
- **공동주최(무순)** : 김상희(국회부의장) · 의원실(김영배·민형배·박주민·박홍근·심상정·양이원영·이수진[비]·이탄희·이해식) · 김진숙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사회원로 모임 · 노동자 김진숙 명예회복과 복직을 위한 노동시민종교인 연석회의 · 리멤버 희망버스 기획단
 - **후원** : 뉴스타파
 - **문의** : 박점규(리멤버 희망버스 대변인) 010-9664-9957
이태호(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 010-2369-5302



국·회·토·론·회

노동자 김진숙 명예회복 및 복직을 위한 긴급 국회토론회

┃ 일 시 : 1월 21일(목) 오후 2시

┃ 장 소 : 참여연대 아람드리홀

CONTENTS

노동자 김진숙 명예회복 및 복직을 위한 긴급 국회토론회

인사말

김상희 국회부의장	i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iii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v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vii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ix
심상정 정의당 국회의원	x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xi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xiii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xiv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xvi
김호규 민주노총 금속노조 위원장	xvii

발 제

1. ‘소금꽃, 노동자 김진숙’의 명예회복과 복직의 사회적 의미	1
송경용 신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회연대위원장	
2. 노동자 김진숙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헌법적 책임	7
오동석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토 론

1. 김소연 비정규노동자의집 꿀잠 운영위원장. 리멤버 희망버스 운영팀장	27
2. 박래군 인권재단사람 소장	33
3. 박승렬 NCKK인권센터 소장. 4.16연대 상임운영위원장	39
4. 조영선 민변 부회장. 전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	45

인사말



김상희 국회부의장

안녕하십니까? 국회부의장 김상희입니다.

한진중공업 마지막 해고자 김진숙 민주노총 지도위원의 복직 투쟁 도보행진이 20여 일을 넘기고 있습니다. 항암치료도 중단하고 엄동설한에 거리로 나설 수밖에 없는 그 심정이 어떨까 생각하니 마음이 무겁습니다. ‘단 하루만이라도 회사로 돌아가 동료들과 함께 밥도 먹고 인사도 나누고 싶다’는 35년 해고노동자의 마지막 바람이 실현되기가 왜 이렇게 어려운 것입니까?

당사자뿐 아니라 그간 노동계와 시민사회에서 김진숙 지도위원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코로나 시국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19일 ‘리멤버 희망버스’ 집회에 차량 400여 대가 전국에서 결집했습니다. 시민들의 공감과 지지가 얼마나 큰지 보여준 것입니다. 지금도 ‘김진숙 희망버스 기획단’은 단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회도 그간 한진중공업 사측과 채권단 산업은행에 전향적 자세로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을 다양한 방법으로 수차례 요청했습니다만,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해 아쉽고 또 송구합니다. 특히 작년 말 사측이 최종 통보해온 내용은 허탈했습니다. 정부 기구의 정식 권고가 배임이라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기존 제도와 시스템으로 더이상 풀 수 없는 막힌 곳을 뚫어내는 것이 정치입니다. 이번에 양이원영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저도 공동발의로 참여한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과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입법을 통해 그 길을 뚫어보겠다는 것입니다.

김진숙 지도위원은 민주화 운동과 노동 운동 과정에서 우리 사회가 낳은 아픔이자 부채입니다. 우리 사회는 그 아픔을 보듬고 그에게 진 빚을 갚아야 합니다. 김진숙 지도위원이 해고노동자의 굴레를 벗고,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기업도 원만한 노사 협의를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진중공업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국회도 필요한 역할을 하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긴급 토론회 개최를 위해 애써주신 김진숙 희망버스 기획단과 양의원영 의원님, 발제와 토론을 맡아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건강이 우선입니다. 단식 중인 분들, 희망뚜벅이를 하고 계신 분들 모두 몸 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김진숙 지도위원이 건강하고 당당하게 정년퇴직자로서 조선소 문을 걸어 나오는 모습을 볼 수 있도록 저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말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서울 성북갑 국회의원 김영배입니다.

근래의 매서운 한파와 연이은 폭설로 인해 몸도 마음도 응축되는 날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노동시장도 코로나19의 여파로 인해 여느 때보다 더 얼어붙어 있어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이런 시기에 국회에서 노동자 김진숙 명예회복 및 복직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김진숙 지도위원은 1986년 한진중공업에서 부당해고된 후 공권력에 의한 국가폭력의 피해자가 되었습니다. 이후 민주화운동보상심의위원회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비롯한 여러 단체들로부터 복직 권고 촉구가 있었지만 한진중공업과 산업은행 측은 ‘업무상 배임’ 등을 이유로 이를 거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도 김 지도위원은 항암치료마저 중단하고 노동운동의 최전선에서 싸우고 계시며, 청와대 앞 단식자들의 단식 또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태일 열사의 분신 투쟁으로 노동자들의 인권과 권리가 재조명되었다고 여겨진 지 50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오늘 날에도 여전히 노동자들의 권리는 보장되지 않고 있으며, 부당 해고와 이로 인한 그들 삶의 비극도 제대로 부각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전에 김진숙 지도위원이 하신 말씀 중에 ‘노동자 스스로 자랑스러울 수 있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문구가 기억에 남는데, 김 지도위원과 같은 노동운동가가 우리 사회에 계시다는 것은 우리로서는 참으로 큰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진숙 지도위원의 명예회복과 복직을 위한 노력은 비단 김진숙 씨 한 분만을 위한 움직임이 아닙니다. 김 지도위원이 쓰신 책 ‘소금꽃 나무’는 제2의 전태일 평전으로 불리는 만큼, 그가 이 땅의 해고 노동자들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마음과 뜻을 대신하기 때문입니다.

저 또한 대한민국에서 노동자분들이 당신들의 가치를 존중받고, 스스로를 자랑스러워 하실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성심껏 노력할 것을 이 자리를 빌려 약속드리며, 여기에 모이신 여러분들이 제안해 주시는 지혜와 고견 또한 입법과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 땅의 모든 노동자들의 노고가 찬연히 빛나는 그 날이 속히 오기를 바라며, 다시 한번 이 자리를 위해 뜻을 모아주시고 관심을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인사말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구를 국회의원 민형배입니다.

‘노동자 김진숙 명예회복 및 복직을 위한 긴급 토론회’ 개최를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 노동자 권익향상은 물론 오늘 토론회 준비에 애 많이 쓰셨습니다. 리멤버 희망버스 기획단, 노동자 김진숙 명예회복과 복직을 위한 노동시민종교인 연석회의, 김진숙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사회원로 모임 관계자 여러분께 고맙다는 인사드립니다.

함께 토론회를 주최하신 김상희 국회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어 코로나19 상황에서 묵묵히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모든 노동자들에 진심어린 응원의 말씀 드립니다. 여러분의 땀방울이 위기극복의 가장 든든한 버팀목입니다. 힘내십시오. 고맙습니다.

노동자 김진숙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노동의 가치와 존엄성을 알려왔습니다. 동료들 먼저 챙기며 존중과 헌신을 보여줬습니다. 21살부터 외친 ‘노동자 김진숙의 목소리’는 35년이 지난 현재 ‘우리 사회 노동자의 목소리’를 대표합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 노동 환경 개선은 이제야 한 걸음 내딛습니다. 이것은 노동자 김진숙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 문제입니다. 우리가 함께 목소리를 내고, 해결해야 합니다.

오늘 토론회가 대한민국 노동자 인권 성장에 중요한 이정표로서 의미 있는 전진이 될 것을 기대합니다.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노동존중 사회’ 실현을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 등 노동정책 실현에 노력했습니다. 그동안 노동의 사각지대를 줄여나가기 위해 다양한 노동정책을 추진해 왔지만, 여전히 개선해야 할 부분도 존재합니다.

오늘 주신 여러 말씀은 물론, 현장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겠습니다. 입법과 제도정비로 노동자의 복지 증진 및 권익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다시 한번, 행사 준비에 수고하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올 한해, 함께하신 모든 분의 가정과 일터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인사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박주민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의 <노동자 김진숙 명예회복 및 복직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준비해주신 관계자분들, 좋은 의견을 주실 시민 사회의 여러분들께 마음 깊이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관심을 가지고 토론회 주최에 힘써주신 모든 의원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1986년 한진중공업 부당해고의 마지막 피해자인 김진숙 해고노동자의 투쟁은 2021년 새해에도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80년대 자신의 해고 이후에도 꾸준히 기업의 구조조정에 반발해왔던 김진숙 해고노동자의 발자취는 더 이상 김진숙 개인의 복직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녀의 투쟁은 모든 노동자의 생명과 권리를 지키기 위한 움직임일 것이며, 국회는 더욱 적극적인 입법권 행사를 통해 노동자들의 목소리에 응답해야 할 때입니다.

특히 김진숙 씨를 해고했던 한진중공업은 민주화운동보상심의위원회의 두 차례의 복직 권고, 국회 환노위 및 노동·시민·종교 단체 대표자들의 복직 권고에도 불구하고 ‘업무상 배임’ 등의 이유로 김진숙 해고노동자의 복직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김진숙법’은 김진숙 해고노동자를 포함한 모든 노동자의 명예회복과 권리 보장을 위한 법률적 근거가 될 것입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노동자의 기본적인 권리 보장이 기업 측 ‘선의’에 의한 것이 아닌 제도적 의무로 인식될 수 있길 바랍니다.

저 역시 지난 1월 동안 기업 측 과실로 인한 중대재해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산업 사고에 대한 과도한 개인적 책임으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는 중대재해법 통과를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20대 국회 때부터 고 노회찬 의원님과 함께 준비했던 그 법안이, 부족하지만 첫 번째 발을 딛게 되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가 등의 괴롭힘소송에 관한 특례법안’ 발의를 통해 노동자의 기본권 보장을 위촉시키는 기업 측 악의적 소송에 대한 법률적 규제를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법안과 관련된 모든 사회 구성원을 설득하는 일이 쉽지는 않았지만, 노동자가 존중받는 대한민국 사회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법안이었습니다.

모쪼록 이번 토론회를 통해 ‘김진숙법’ 역시 그 필요성과 의미를 공론화하고, 김진숙 씨의 조속한 복직 및 명예회복을 시작으로 점차 더 많은 해고노동자를 보호하는 안전장치로 역할 할 수 있길 바랍니다.

부당함에 맞서 싸우는 이들에게 새해가 왔다는 것은, 결국 한 해 더 싸워나가야 한다는 의미와도 같습니다. 모든 해고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더 나은 노동환경을 마련하는 일이 더 오래 걸리지 않도록 오늘의 논의를 기반으로 저부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구(을) 국회의원 박홍근입니다.

1981년 대한조성공사(한진중공업 전신)에 조선소 첫 여성 용접공으로 입사한 김진숙 지도위원은 86년 2월 노조 집행부의 어용성을 폭로하는 홍보물을 배포했다가 그해 7월 해고됐습니다.

그 이후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심의위원회’는 두 차례나 ‘해고가 부당하다’며 한진중공업에 김 지도위원의 복직을 권고했고, 지난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부산시의회도 김 지도위원의 복직을 촉구했지만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김진숙의 복직과 명예 회복’은 지난 수십 년 간 일어난 노동자들에 대한 부당 해고와 폭력, 죽음의 고리를 끊어내겠다는 다짐의 상징이 될 것이며, 그 해결을 위한 역사적 계기가 될 것입니다.

KDB산업은행은 한진중공업의 주 채권자이자 국책은행으로 책무를 다해야 합니다. 한진중공업에 진심을 다해 노동자 김진숙에 가한 반노동행위의 시정을 요구하고 부당해고와 그 후 35년간 침해된 권리 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어려움을 딛고 미래로 나아가고자 하는 한진중공업도 즉각적인 복직수용을 통해 노동존중이라는 경영지표를 천명해야 합니다.

국회에서도 국민의 대표로서 특정기업 노사간의 문제가 아닌 노동자에게 가해진 부당 행위로 보고 그의 명예와 권리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오늘 토론회를 통해 김진숙 노동자의 복직과 명예회복이 더욱 공론화되어 하루빨리 김진숙 노동자가 마음편히 치료받으며 쾌차하기를 기원합니다.

인사말



심상정 정의당 국회의원

안녕하세요. 정의당 국회의원 심상정입니다.

금속사업장 현장을 함께 누비던 동지인 김진숙 지도위원의 ‘명예회복 및 복직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공동주최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토론회를 함께 주최하는 양의원영 의원님을 비롯해, 토론회를 준비해주신 리멤버 희망버스 기획단, 노동시민종교인 연석회의 관계자분들께 먼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토론회는 열리지 않았더라면 훨씬 좋았을 겁니다. 1986년 7월 14일 이후 35년, 모든 날이 김진숙을 복직시키기에 좋은 날이었습니다. 그러나 2009년 민주화운동보상심의위원회가 복직 권고를 했을 때도, 2011년 85호 크레인 위에서 309일간 고공농성을 마치고 지상으로 내려왔을 때도, 작년 국회 환노위 소속 여야 국회의원 전원이 한 목소리로 복직을 촉구했을 때도 김진숙 위원은 복직하지 못했습니다. “김진숙만은 안 된다”는 한진중공업 사측의 집요한 저항 앞에 정부는 번번이 해고자 복직은 노사 자율결정 사항이라는 원칙론만 되풀이하며 뒷짐을 지고 있습니다.

지난 35년간 노동 시민 종교계가 한뜻으로 김진숙 위원의 복직을 촉구해온 이유는, 이 복직이 곧 대한민국으로부터 해고당한 노동의 복직이고, 인권의 복직이기 때문입니다. 양의원영 의원께서 지난 12월 ‘김진숙법’ 발의를 통해 사측이 주장해온 배임 우려를 말끔히 해소한 만큼, 고용노동부와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은 “노동의 가치가 제대로 존중받는 세상을 만들겠다”던 대통령의 약속을 제대로 실천에 옮겨주기를 바랍니다.

저와 정의당은 김진숙 지도위원의 노동존중사회를 향한 사력을 다한 발걸음에 끝까지 동행하겠습니다. 오늘 토론회가 김진숙을 살리고, 나아가 국가폭력과 자본권력으로부터 노동인권을 회복하기 위한 뜨거운 연대의 장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인사말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양이원영 입니다.

1986년, 가혹한 조선소의 노동자 권익을 위해 나섰다는 이유로 직장에서 쫓겨난 한 용접공이 있었습니다.

2011년, 동료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309일이라는 긴 시간을 고공크레인에 오른 한 노동운동가가 있었습니다.

힘든 처지의 노동자를 위해 항상 제일 앞자리에 나섰던 김진숙이라는 이름은 우리 사회의 큰 빛이자, 빛입니다.

그렇게 해고노동자 김진숙이 부당해고에 맞서싸운 세월이 어느덧 35년이 되었습니다. 강산이 세 번 넘게 바뀌는 시간동안, 우리 경제와 사회는 눈부시게 발전했습니다. 그러나 김진숙이라는 이름을 떠올릴때마다 노동자들의 시계는 1986년에 멈추어 있는 것만 같아 늘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두 차례의 민주화운동보상심의위원회의 복직 권고, 부산시의회 여야 의원 전원의 복직촉구 결의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복직 촉구, 그리고 두 차례의 사회원로들과 노동시민종교 단체 대표자들의 복직권고까지 35년동안 우리 사회 곳곳에서 김진숙의 복직을 위한 노력은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무슨 이유에서인지 김진숙이라는 한 사람의 부당해고 노동자가 직장을 되찾는 길은 너무나도 멀기만 합니다.

재발한 암투병마저 멈추고 부산에서 서울까지 ‘희망 뚜벅이’를 이어오고 있는 김진숙 지도위원의 건강이 흑한의 칼바람에 더 악화되지 않을까 모두들 걱정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의 복직은 더 이상 미루어서는 안 될 우리 사회의 숙제입니다.

지난 12월 29일, 저는 ‘(가칭) 김진숙법’이라는 명칭으로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과 ‘민주화

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2개 법안을 16명의 국회의원과 함께 발의했습니다. 이 법을 통해 공적자금을 지원받는 기업에서 사회적 가치에 반하는 대량해고가 이루어지지 않고, 복직권고를 받은 노동자가 다시 일자리를 되찾을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귀중한 자리의 마련을 위해 함께 애써주신 김상희 국회부의장님, 김영배 의원님, 민형배 의원님, 박주민 의원님, 박홍근 의원님, 심상정 의원님, 이수진 의원님, 이탄희 의원님, 이해식 의원님과 '리멤버희망버스 기획단', '노동자 김진숙의 명예회복과 복직을 위한 노동시민종교인 연석회의', '김진숙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사회원로모임'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끊임없는 어려움에도 꺾이지 않고 굳건하게 함께해주신 김진숙 지도위원님께 감사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사말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이수진입니다.

먼저 ‘노동자 김진숙 명예회복 및 복직을 위한 긴급 국회토론회’를 위해 애써주신 김상희 국회 부의장님,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민형배, 박주민, 박홍근, 양이원영, 이탄희, 이해식, 정의당 심상정 의원님, 리멤버희망버스기획단, 노동자김진숙의명예회복과복직을위한노동시민종교인연석회의, 김진숙복직과명예회복을위한사회원로모임과 좌장인 정강자 공동대표님, 발제자, 토론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981년 10월 한진중공업 용접공으로 입사해 1986년 2월 노조 대의원이 되어 노조 집행부 어용성을 비판하는 유인물 제작·배포로 같은 해에 징계해고된 <소금꽃나무> 저자이자 2011년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반대 희망버스 주역인 김진숙님이 한진중공업 상대로 복직투쟁에 나선다는 소식을 접한 게 지난해 여름 무렵이었습니다.

그간 또다시 많은 분들이 합심해 노동자 김진숙의 명예회복과 복직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무정하게 정년인 지난해를 넘기고 긴급토론회를 개최하는 오늘도 노동자 김진숙은 희망 뚜벽이로 길위를 걷고 있어 표현할 길이 없게 마음 아픈 참혹한 상황입니다.

35년이 지났습니다. 스물여섯 살. 검은 보자기에 덮어씌운 채 대공분실로 끌려가 다시 돌아가지 못한 공장을 내 발로 걸어 나오고 싶다는 한진중공업 마지막 해고자 김진숙님의 희망이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한진중공업과 산업은행이 더 늦지 않게 바람직한 해결방안을 만들어주길 기대하며 저 또한 국회 환노위 위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인사말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안녕하십니까. 국회의원 이탄희입니다.

여러분들의 기억 속에 ‘김진숙’이라는 사람은 어떤 모습으로 남아있는지요?

많은 사람들이 2011년 한진중공업 구조조정에 맞서 높이 35미터의 조선소 크레인에서 309일 동안 고공농성을 한 투쟁노동자로 기억할 것입니다.

35미터 공중에 오르기까지 그가 살아낸 인생,

그리고 크레인에서 내려온 후의 김진숙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노동자 김진숙은 신문배달, 버스안내양, 미싱사를 거쳐 1981년 용접공 노동자로 한진중공업에 입사했습니다. 86년, 입사한 지 5년 만에 노동자들을 향한 조선소의 부당한 처우에 맞서 싸우다 해고당했습니다.

불법적으로 해고를 당한 지 35년이 지났지만, 그는 아직 복직하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밖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2021년 1월, 현재에도 부산에서 청와대까지 자신의 복직을 촉구하는 도보 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이 걸어온 길이 곧 한국 노동자의 역사입니다.

그의 인생은 달라진 것 하나 없는 노동자에 대한 처우를 보여주는 대한민국의 한 단면이기도 합니다.

이제 그의 명예회복을 위해 국회가 움직여야 할 때입니다.

저 또한 김진숙씨의 복직이 이루어지고 그의 명예가 인정받을 수 있도록 여러 논의 과정에 참여하고 관련 제도를 살펴보고겠습니다.

김진숙씨의 복직과 명예회복에 대한 국회 차원의 논의를 위해 힘써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주신 김상희 국회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 '리멤버희망버스 기획단', '노동자 김진숙의 명예회복과 복직을 위한 노동시민종교인 연석회의', '김진숙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사회원로모임'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노동자의 권익을 위해 당신의 한 평생을 불태우신 '소금꽃' 김진숙 지도위원님께 특별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고맙습니다. 건강하십시오.

인사말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동을 국회의원 이해식입니다.

먼저 오늘 토론회 개최에 애써주신 김상희 국회부의장님, 김영배 의원님, 박주민 의원님, 박홍근 의원님, 민형배 의원님, 심상정 의원님, 양이원영 의원님, 이수진 의원님, 이탄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칼바람이 부는 엄혹한 날씨에도 김진숙 지도위원의 명예회복과 복직을 위해 힘써주시는 ‘리멤버 희망버스 기획단’, ‘노동자 김진숙 명예회복과 복직을 위한 노동시민종교인 연석회의’, ‘김진숙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사회원로 모임’ 관계자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986년, 한진중공업 용접공 노동자였던 김진숙 지도위원은 어용노조를 비판하고, 신일금속 노사분규에 개입했는지를 조사받았다는 사실을 이유로 부당해고라는 억울함을 겪었습니다. 이후 두 차례의 민주화운동보상심의위원회의 복직 권고, 부산시의회 여야 의원 전원의 복직촉구 결의문, 국회 환노위의 복직 촉구 등 김진숙 지도위원의 명예회복과 복직을 위한 움직임이 있었지만 사측은 복직 요구를 ‘업무상 배임’의 이유로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용접사이자 35년 아파하고 고통당하며 투쟁하는 노동자의 벗이 되어 함께 울고 웃으며 어깨 건 김진숙’.

김진숙 지도위원의 동료들은 그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부당해고에 맞서 싸웠던 지난 35년의 세월 속에는 자신의 문제 해결을 위한 투쟁뿐만 아니라 동료의 문제, 우리 사회의 노동문제에 대한 깊은 고민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김진숙 지도위원의 명예회복과 복직은 더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저 또한 오늘 이 자리를 토대로 바람직한 해결방안이 조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노동자들이 진정으로 인간의 존엄성을 인정받고,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인사말



김호규 민주노총 금속노조 위원장

설국열차가 생각나는 2021년 1월입니다. 북극한파가 오랜만에 매섭습니다.

소한을 지나 대한으로 겨울추위는 맹위를 떨치고 코로나19 상황까지 더하여 곳곳에서 삶의 온기마저 잃어버린 시대입니다.

노동존중사회를 말했던 현 정부의 노동관련 여러 정치적인 행위를 보고 느끼면서 설국열차가 생각납니다.

어디로 가고 있는지..

어디쯤이 종착역인지..

끝없이 질문들을 할 수 밖에 없는 답답한 시대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하루를 살더라도 인간답게 살고 싶습니다.

이런 김진숙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해 “Remember 김진숙”을 만들고자 29일째(1월19일 현재)곡기를 끊고 절박한 심정으로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풍찬노숙하는 노동자, 민중, 신부님들이 있습니다.

시대의 어둠을 걷어내기위해, 같이 꾸는 꿈을 현실에서 만들고자, 부산에서 청와대까지 김진숙과 함께 두박두박 걷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의 희망과 꿈에 대해 이제는 정부가 답해야 합니다.

더욱더 코로나19 상황에서 일상이 너무나도 소중한합니다.

그런 일상이 무너진채 36년동안 버텨왔던 노동자가 있습니다.

금속노조 부산양산지부 한진중공업지회 부당해고된 노동자 김진숙입니다.

한진중공업 파란 작업복 입고 당당하게 출근할 수 있는 희망을 만들어야합니다.

지난 19일 김진숙 조합원 명예회복과 복직을 위한 노동시민종교 연석회의는 정세균 총리와의 면담자리에서 아래와 같은 요구안을 전달한바 있습니다.

(1) 국가폭력에 의한 부당해고에 대한 정부(대통령)의 인정과 사과

잘못된 과거를 바로잡는 것은 국가의 의무로 대한민국에서 노동자가 국가의 존재를 실감할 수 있도록 당사자에게 [국가폭력에 의한 해고에 대해 사과]

(2) 김진숙 지도위원에 대한 즉각 복직 약속

정당한 조합활동을 이유로 해고된 김진숙을 2021년 1월22일(금)부로 대한민국 직권으로 한진중공업에 복직시킨다. 1986년 7월14일 대한조선공사(현 한진중공업)가 ‘국가기관인 경찰조사를 받은 것을 이유로’한 해고가 원천무효임을 확인한다. 원천무효 확인은 [민주화 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 두차례 결정문으로 같음한다. 복직과 명예회복에 따른 후속 절차 및 내용은 별도 논의한다.

36년 기나긴 길이었습니다. 기회가 있을때마다 자신의 복직보다는 동료 선후배들의 복직과 안위를 먼저 챙겨주었습니다. 이제는 김진숙 조합원의 복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우리사회가 무한궤도로 돌아가는 설국열차이기보다는 노동존중으로 나아가는 희망 열차이기를 기대해봅니다.

오늘 토론회에 함께한 여야 국회의원님들과 관심과 지지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노동자 김진숙 명예회복 및 복직을 위한 긴급 국회토론회

발제 1

‘소금꽃, 노동자 김진숙’의 명예회복과 복직의 사회적 의미

송경용

신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회연대위원장

'소금꽃, 노동자 김진숙'의 명예회복과 복직의 사회적 의미

송경용 신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회연대위원장

1. 스물 한 살 용접 노동자 김진숙이 예순 한 살, 열여덟 살 한복집 노동자가 민주노총 부산본부 지도위원이 되었습니다. 스물 한 살의 나이로 부산 영도 조선소에서 일하던 평범한 용접공이 노동의 상징이 되었고, 우리 사회의 모순을 온몸으로 고발하는 사회적이고 역사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2. 이는 그의 의지로부터 출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공권력에 의한 불법 연행과 폭력, 불법부당한 해고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3. 노동자 김진숙은 자신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만 살아온 사람이 아닙니다. 자신의 문제를 동료의 문제로, 우리 사회 전체의 문제로 확산시켰습니다. 고난받는 동료들의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보다 동료들의 문제를 먼저 해결하기 위해 애써온 사람입니다.
4. 노동과 자본의 대결을 뛰어넘어 노동과 인간 존엄을 지키기 위해 싸웠습니다. 그래서 그를, 그가 제기하는 문제를 한 기업의 틀 안에서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5. 김진숙 지도위원의 문제는 국가가 저지른 공권력에 의한 폭력에 대한 인정과 사과, 보상으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인간과 노동의 존엄성을 무자비하게 짓밟은 그 시간, 그 자리, 그 행위에 대해 국가는 공식적으로 사과해야 합니다. 첫 출발의 자리에 서야 나머지 길을 온전히 갈 수 있습니다.
6. 그동안 국가(정부)는 빠져 있었습니다. 국가폭력의 당사자이자 불법부당한 해고의 원인 제공자이면서도 노사관계로만, 김진숙 지도위원과 한진중공업의 문제로만 책임을 미뤘습니다. 이제라도 국가(정부)는 결자해지의 자세로 나서야 합니다.
7. 김진숙 지도위원의 문제는 인간존엄의 문제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한 인간의 온 생애라고 할 수 있는 35년을 묶어놓았고, 배제했고, 탄압했습니다. 그가 남의 생명을 해친 것도 아니고, 남의 재산을 강탈하지도 않았음에도, 국가와 기업은 다른 사람은 다 되어도 그만은 안 된다는 '블랙리스트'로 낙인을 찍음으로서 잔인하고 가혹한 형벌을 부과했습니다. 국가와

기업은 ‘김진숙’이라는 한 인간의 존재를, 존재하지만 존재할 수 없도록 배척했고 말살해 왔습니다.

이는 단지 김진숙이라는 한 인간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와 함께 했던 그의 노동자 동료들, 그를 사랑했고, 그가 사랑했던 모든 인간에 대한 폭력이었습니다. ‘사람이 우선’이라는 구호는 김진숙이라는 한 인간에게 35년 동안 가해졌던 배제와 폭력에 대한 사과로부터 시작해야 그 진정성이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더 많은 이익의 추구를 위해 사람의 생명까지도 경시했던 물질주의 사회로부터 참다운 인간존중의 사회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8. 김진숙 지도위원의 문제 해결은 노동의 가치 회복이라는 관점으로 보아야 합니다. 단순히 일개 기업의 노사관계 해결이 아니라 ‘김진숙’, ‘소금꽃’으로 표상되는 그의 노동, 노동자들의 헌신에 대해 경의를 표하지 못할망정 공정하게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사회가 이만큼 성장하는데 노동의 희생과 헌신을 빼고 이야기 할 수 있겠습니까.

노동은 그 자체로 인간의 모든 행위 중에서도 가장 거룩한 행위입니다. 밥을 짓고, 옷을 지으며 생명을 유지, 성장, 성숙케 하는 모든 행위가 노동입니다. 그러나 자본주의, 물질주의에 의해 노동과 노동자는 더 많은 이익 창출을 위한 도구가 되었고 상품이 되었습니다.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자본주의의 폐해가 시작되던 19세기 영국의 사상가 존 러스킨은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도』(마태복음 20장)라는 책에서 노동은 양으로 계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노동자는 단순히 물건을 만드는 도구가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인간과 사회의 생명을 살리는 기본이 노동이기 때문에 정부와 기업가는 마땅히 노동자의 가족들이 충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임금, 한 인간으로서 교양과 존엄을 회복할 수 있는 충분한 휴식과 시간을 제공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럴 수 있는 능력이 되지 않았습니까? 물질의 경제에서 생명의 경제로 성숙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9. ‘소금꽃 김진숙’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과거를 바로잡음으로서 역사를 바로 세우는 일, 인간과 노동의 존엄성을 회복하기 위한 시대정신의 상징이자 제물로 그 자신을 바쳐왔습니다. 인간과 노동의 존엄이라는 가장 높은 이상을 추구하며 저항하고 투쟁했으나 가장 낮은 자세로 자신을 비우며 동료들을 위해 희생했습니다. 성서에서 말하는 겸손한 자였으며, 불가에서 말하는 보살행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10. 기업인들은 모험적이고 혁신적인 기업가 정신을 이야기합니다. 그 기업가 정신이 한강의 기적, 산업화를 이루었다고 합니다. 정치인들은 민주화의 지난한 역사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노동자들은 무엇으로 자신을 이야기 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으로 이 사회는 노동자들을 표상해야 할까요?

저는 '소금꽃'이 하나의 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과 가족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해 흘린 땀의 결정입니다. 기업가 정신, 민주 투사만큼이나 노동, 소금꽃을 인정하고 대우해야 합니다. 그것이 공정이고 공평이며, 우리 시대가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추구해야 할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정치, 기업만으로 세상이 굴러가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면서 노동을 배척하고 무시해왔습니다. '소금꽃 김진숙 노동자'를 통해 정의롭지 않은 불공평의 시대를 끝내야 합니다.

11. 김진숙 노동자는 한진중공업의 노동자였습니다. 그 노동자를 국가의 공권력이 끌어내서 고문과 폭력을 가했고, 기업은 해고했습니다. 그 뒤로 35년이 흘렀습니다. 처음으로 돌아가야 이미 지나온 길, 가야할 길을 온전히 갈 수 있습니다. 처음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처음의 자리로 돌아가게 해주어야 합니다.

결어

정부의 국가폭력 인정과 사과가 즉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기업(한진중공업) 역시 책임을 인정하고 즉각적인 복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주 채권은행으로서 실질적인 권한을 가진 국책은행으로서 공공기관인 산업은행은 문제 해결에 더욱더 책임있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35년의 부당한 세월에 맞서 '소금꽃 김진숙 노동자'가 다시 항암치료조차 거부한 채 목숨을 걸고 이곳 서울, 청와대를 향해 '만인의 길'을 걸어오고 있습니다. 더 늦출 수 없습니다. 대통령과 정부, 기업, 산업은행의 책임 인정과 즉각적인 조치를 촉구합니다.

노동자 김진숙 명예회복 및 복직을 위한 긴급 국회토론회

발제 2

노동자 김진숙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헌법적 책임

오동석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노동자 김진숙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헌법적 책임

오동석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 노동자 김진숙 탄압 사건¹⁾

노동자 김진숙은 신문배달, 버스안내양, 봉제공장 미싱사를 거쳐 1981. 10. 1. 대한조선공사 주식회사(현 한진중공업) 용접공 노동자가 되었다. 1986년 2월 18일 노동조합의 대의원에 출마하여 당선되었다. 1986년 2월 20일 “제23차 정기 대의원 대회를 다녀와서”라는 제목의 유인물 150여 부를 동료 노동자와 제작·배포했다. 대의원으로서 보고 내용을 담은 것으로서 노동조합 집행부의 어용성을 폭로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1986년 5월 20일부터 7월 2일까지 모두 3차례에 걸쳐 당시 부산직할시 경찰국 대공분실에 연행되어 조사를 받았다.

두 번째 대공분실을 다녀온 이후에는 현장직에서 사무직으로 배치전환되었다. 현장 노동자들과 김진숙을 분리하기 위함이었다. 실제로 배치전환이 이뤄지지 않는 않았다. 세 번째 대공분실 다녀온 뒤 김진숙의 두 번째 배치전환 처분이 있었다. 직업훈련소 강사로 배치전환되었다. 기존의 영도조선소에서 차로 1시간 이상 떨어진 곳이고, 김진숙은 채용 조건을 충족하지 않은 상황이었으며, 직업훈련소에는 조합원이 한 명도 없는 곳이었다. 김진숙이 노동조합 활동을 하지 못하게 함과 동시에 실제 할 수 없는 업무를 부여하여 스스로 그만두게 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김진숙은 직업훈련소 배치전환이 부당하다고 그 시정을 요구하며 영도조선소로 출근 투쟁을 시작했다. 매일 아침 사복·정복의 경찰과 전투경찰 차까지 배치하여 감시했다. 나중에는 김진숙의 집 앞까지 경찰, 회사 관리자, 그리고 어용노조 간부들이 대문을 막아서서 출근하지 못하게 저지했다.

1986년 7월 14일 집 대문에 해고장을 붙였다. “경찰 조사를 받은 사실을 이유로” 징계해고되었다. 노동조합 대의원으로서 어용노조를 비판하고 신일금속 노사분규에 개입했는지를 조사받은 것을 빌미로 삼은 것이다. 이후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진행했으나 패소 확정되었다.²⁾

2009년 11월 2일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는 한진중공업에서의 노조

1) 보상심의위원회, 2009; 노동법률단체, 2020; 김진숙 희망버스 기획단, 2020a; 김진숙 희망버스 기획단, 2020b; 김진숙 희망버스 기획단, 2020c; 연석회의, 2021 등 참고. 또한 Redian 2020. 10. 26. “환노위 노동부 국정감사, 여·야 한목소리로 김진숙 복직 촉구”. <<http://www.redian.org/archive/147576>>, 검색일: 2021. 1. 19.

2) 2003년 10월 17일 김주익 한진중공업 지회장 그리고 같은 달 30일 광재규 조합원이 자결했다. 같은 해 11월 15일 김진숙 해고자만 빼고 20명이 복직했다. 이 중 3명은 본인이 원해서 금전보상으로 합의했다. 당시 김진숙의 복직은 경총과 전경련 등 재계에서 반대한다는 이유로 복직 합의가 거부당했다.

민주화 활동을 민주화운동으로 그리고 김진숙의 부당해고를 인정했다.³⁾ 국가폭력에 의한 고문의 흔적까지 확인했다. 위원회는 11월 11일 민주화운동관련자 증서를 발급했다. 2009년 11월 2일 심의위원회의 부당해고 인정을 근거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2010년 1월 민사소송의 재심청구(해고무효확인청구) 후 소송이 취하되었다. 재심 담당 변호사가 제척기간 30일을 초과하여 소장을 접수했기 때문이었다.⁴⁾

김진숙 지도위원이 ‘김진숙만은 복직시킬 수 없다’는 사실상의 블랙리스트를 감내했던 이유는 복직의 정당성이나 의지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다른 이들의 복직을 우선했기 때문이었다. 2020. 4.경부터 김진숙 지도위원의 복직과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위로금)과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며 사측과 교섭을 벌였다. 2020년 9월 25일 위원회는 다시 복직을 재권고했다. 그러나 해고 35년이 되도록 그리고 2020년 12월말 정년이 되도록 회사의 복직 조치는 없었다.⁵⁾

현재 한진중공업의 법정관리는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맡고 있다. 그런데도 이 사건의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 2020년 9월 11일 부산시의회는 ‘한진중공업의 투명하고 공정한 매각과 해고노동자 김진숙 복직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2020년 10월 2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중 김진숙과 한진중공업 이병모 대표 그리고 경사노위 위원장 문성현 등이 출석한 자리에서 특별결의안을 채택했다. 그 내용은 “김진숙 씨는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에서 민주화 운동을 이유로 해직된 자로 결정하고 복직을 권고한 바 있지만 아직까지 한진중공업에서는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었다. “첫째, 한진중공업은 해고노동자 김진숙 씨가 조속히 회사에 복직하여 명예를 회복하고 일할 수 있도록 할 것, 둘째, 한진중공업은 법률에 따라 심의, 결정한 정부 권고를 받아들여 조속한 복직과 더불어 관련 제반 사항을 성실히 협의할 것, 셋째, 한진중공업의 주 채권단인 한국산업은행은 김진숙 씨 복직이 원만하게 결정될 수 있도록 조치, 협조할 것을 여야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으로 엄중히 권고하는 바이며 조속한 시일 내에 원만히 해결되길” 바란다는 것이었다.

특히 국회 환노위의 특별결의안은 그 자리에 출석한 정부 대표인 경사노위 위원장 문성현에게 빠른 해결의 주체로 나서도록 촉구했다. 그러나 이병모 대표⁶⁾와 문성현 위원장 그리고 이동걸

3) 불인정한 사안도 있었는데, 그 이유는 설득력이 떨어진다. 그것은 “신청인의 행위는 이른바 문민정부 이후의 활동인 바, 문민정부의 성격을 권위주의 정권이라고 쉽게 단정할 수도 없거니와 이 과정에서 보여준 위법과 비인격적 행동으로 비추어 볼 때 민주화운동과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려움”이었다.

4) 2020. 10. 14. 담당 변호사가 작성한 사실 확인서가 있다.

5) 그동안 대공분실에 세 차례 끌려가고, 징역을 세 번 살았으며, 5년 동안 수배 생활을 겪었다. 2011년 한진중공업 대량 해고를 막기 위해 40m 높이의 크레인에서 309일 동안 고공농성을 했다. 다섯 차례의 희망버스 연대에 힘입어 해고자들은 모두 복직했다. 그러나 정작 본인은 복직하지 못했다.

6) 10. 20.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병모 대표는 “김 지도위원이 지금 회사로 돌아와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크게 반대합니다”면서도 “급여와 퇴직금 등을 달라고 하는 점 때문에 법률적 검토를 받았더니 과거 중앙노동위원회 결정과 법원 판결

KDB산업은행 회장은 부당해고 기간 동안 임금산정이 '업무상 배임'이라는 논리로 발뺌했다. 2020년 12월 11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을 비롯한 법률 5단체는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II. 노동자 탄압에 대한 국가와 기업의 헌법적 책임 그리고 피해자의 권리

1. 노동자 탄압의 국가폭력(국가범죄)과 문재인 대통령의 헌법적 책임

1970년대 박정희의 유신독재는 노동자들에게 경제성장 후 분배를 약속하며 노예노동을 감수하도록 강요했다. 국가의 조직적이고 대대적인 노동자 탄압과 노조파괴 공작이 있었다. 노동자에 대해서는 국가폭력이 일상적으로 가해졌다. 그러나 산업화 신화와 함께 모든 수익은 재벌의 몫이었다. 80년대 전두환·노태우 정권 때도 사정은 달라지지 않았다. 김영삼 정부의 노동정책도 노태우 정권 시기의 노동통제 전략을 그대로 답습했다(인수범, 1996: 43). 배제 전략으로 해마다 2400여 명이 노동하다가 산업재해로 사망한다. 그중 절대다수가 비정규직 노동자다. 이명박 정권 시절 청와대, 국가정보원, 고용노동부 등은 대대적인 노조파괴 공작을 벌였다. 2010년 2월부터 12월까지, 11개월 동안 176건의 노조파괴 문건을 주고받았다. 청와대가 국정원에 자료를 보내면, 국정원이 이를 토대로 문건을 만들어 청와대에 보고하는 식이었다.⁷⁾ 박근혜 정권에서도 달라졌다고 보기 어렵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에서 청와대, 국가정보원, 문화체육관광부 등은 조직적으로 헌법적 국가범죄(Regierungskriminalität)⁸⁾를 저질렀기 때문이다.

권혜령(2020: 78)은 갈통의 개념을 빌어 노동관계에서 구조적 폭력을 설명한다. 주요 내용 중에 사용자의 부당해고와 노조 조직화 방해, 노조파괴 그리고 공권력을 동원한 노조 공격과 법을 통한 권리 배제 등이 일상화한 사회를 포함한다.

문재인 정부가 국정과제 1호로 내세웠던 적폐 청산은 정권을 교체할 때마다 헌법적 범죄를 청산해야 하는 헌법적 과제다. 헌법 부칙 제5조는 “이 헌법 시행 당시의 법령과 조약은 이 헌법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한 그 효력을 지속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재승(2009: 224)은 헌법 부칙 제5조를 “여과조항”이라고 규정한다. 통상은 헌법을 개정할 때의 문제지만, 국민의 심판에 따른 정권 교체의 경우로 확장할 수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으로 파면되었으므로 문재인 정부는 이전 정부와 단절을 분명히 해야 할 헌법적 책무가 있다.

등이 있는 상황에서 배임이 될 수 있다고 한다”는 의견을 받았다며 ‘배임’ 가능성 때문에 부정적인 의견을 밝혔다.

7) 참세상 2020. 5. 12., “MB국정원 작성 노조파괴 문건 ‘176개’ 드러나: 노조 조직을 상습 억제 계획도 세워”,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id=69107>>, 검색일: 2021. 1. 19.; 참세상 2020. 6. 1., “MB정부-국정원의 ‘노조파괴’ 수사기록 보고서: 2009-2011년 이어진 노조파괴 전말...검찰 수사기록 입수”,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id=69182>>, 검색일: 2021. 1. 18. 참조.

8) 국가범죄는 국가권력을 매개로 저지른 조직적 범죄를 총칭하는 개념이다(이재승, 1999: 195).

그런데 동시에 문재인 대통령은 전 정권의 노동 탄압에 대해 헌법적 책임이 있다. 전 대통령은 지금 정부의 국가기관, 즉 국가정보원과 각 행정부처를 이용하여 국가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이다. 관련 국가기관의 과거 국가범죄가 드러날 때마다 사건의 진실 규명을 요청하는 피해자의 목소리가 나올 때마다 직접 또는 관련 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민주화로 가기 위한 이행기 정의를 구현해야 한다. 그것은 식민지배에 대해 우리가 일본 정부에게 요구하는 바이기도 하다. 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사과도 잘못에 대한 표명만으로 절대 부족하다. 법의 세계에서 요구하는 사죄는 순수 내면에서의 사죄가 아니라 직분상 또는 자신의 행위의 대가로서 사회적 영역에서 발생한 명백한 과오에 대한 시인을 의미한다(이재승, 2015: 111). 칸트의 용어를 차용하면 그것은 '도덕적' 사죄가 아니라 '합법적' 사죄다(이재승, 2015: 111).

대통령의 사과는 진실 규명과 문책 그리고 재발 방지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국정체제를 탈바꿈하는 행동을 요구한다. 과거의 폐단이 하루아침에 이뤄진 것이 아니라 누적해서 쌓인 것이기 때문이다. 과거와 현재에 이르기까지 피해를 입은 시민이 많고, 그리고 대통령이 아무 조치를 하지 않으면 앞으로 더 많은 시민들이 피해를 입을 것이기 때문이다. 대통령의 사과는 법과 제도 그리고 정책과 결부해야 한다. 새 술을 새 부대에 담기 위해 구 정권의 수하였던 공무원 조직을 인적 차원에서 물갈이할 수는 없지만, 국가기관 간 권력 배치와 권한 행사 방식을 바꿀 수 있다. 여기에서 다시 과거 정권과 단절이 필요하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각종 국가범죄 사건과 관련해서 청와대와 국가정보원 그리고 각 행정부처로 이어지는 조직과 정책의 수행체계를 규명하지 못했다. 오히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 관련 진상 규명도 없이 하급공무원들을 면책했다. 그 말인즉슨 결과적으로 상급자가 명령하는 대로 따르기만 하면 문책은 없다는 메시지였다. 또 결과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죄는 가벼워졌다. 국가범죄의 전모가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축소·은폐의 의혹마저 제기될 수 있다.

입헌민주주의국가에서는 권력분립원칙이 중요한 헌법원칙 중 하나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권한은 한계가 있다. 그러나 대통령은 국가를 대내외적으로 대표하며, 행정권을 행사한다(헌법 제66조). 우리나라 헌법의 경우 정부에게는 법률안제출권이 있다(헌법 제52조). 법률을 제·개정하는 것은 국회의 권한이지만, 국정의 방향과 원칙 그리고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다. 그 과정에서 다양한 시민사회 의견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모을 수도 있다. 국회도 대의기관이므로 국민적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다.

노동관계를 표현할 때 노사정이라고 한다. 노사관계는 사법상의 관계가 아니라 정부가 주요 관계 주체인 동시에 오히려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한다. 헌법에서 노동권과 노동3권의 보장은 국가가 노동자의 편에 서서 노사균형관계를 조정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의미한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보장할 의무를 지고 있기 때문이다(헌법 제10조제2문).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 위기에 몰리자 개헌을 통해 문제를 호도하려 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개헌을 시도했다. 양자의 개헌 시도는 다르다. 그러나 정말 다르게 접근하려면 헌법 개정 이전에 법률 개정 또는 행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한다. 아직도 국가기관이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노동계를 탄압했는지, 지금은 어떤 식으로 그것이 이뤄지고 있는지를 규명하고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 노동자 김진숙은 개인 김진숙이 아니라 한국의 노동자를 대표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이다. 수많은 노동자들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그들의 외쳤던 목소리를 다시 법과 제도와 정책으로 바꿔내는 일이이어야 한다.

대통령의 책임은 과거 책임을 끌어안고 미래 책임으로 나아가야 한다. 대통령은 취임하면서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하는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선서했다. 선서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어져야 한다. 그것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존재하는 한 계속하는 영속성의 원천이다.

2. 기업의 헌법적 책임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인권경영의 논의가 있다. 기업에 대한 헌법적 책임 논의는 주로 소비자로서의 권리에 상응한다. 헌법 제124조는 소비자운동을 보장한다. 그러나 시민이 국민으로서 그리고 주권자로서의 지위는 소비자 이상의 지위다. 예를 들면 국민경제상 긴절한 필요가 있다면 법률이 정함에 따라 사영기업의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하거나 심지어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할 수도 있다. 국민의 기본권도 제한할 수 있다면(헌법 제37조제2항),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는 더욱 제한 가능하다. 경제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이루기 위해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헌법 제119조제2항). 노동자의 노동권(헌법 제32조)과 노동3권(헌법 제33조)의 보장이 우선한다. 기업을 재산권의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토지만큼 기업은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운용해야 한다(헌법 제23조제2항).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은 <IFC(국제금융공사)의 이행지침>, <적도원칙>, <다국적 기업에 대한 OECD 가이드라인> 등에 따라야 한다. IFC 이행지침과 적도원칙은 “대규모 개발프로젝트가 환경파괴를 일으키거나 지역주민 또는 사회적 약자들의 인권을 침해할 경우 자금 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금융회사들의 행동협약이다. <다국적 기업에 대한 OECD 가이드라인>은 “기업은 정책상의 의지와 실제 집행과정 모두에서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 “기업은 기본노동권을 존중해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연석회의, 2021: 3).

정치경제학이나 정치사회학의 시선에서 국가범죄는 국가·기업범죄이면서 국가·사회범죄다.⁹⁾ 한국에서 기업은 노조파괴에 직접 관여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¹⁰⁾ 이러한 기업범죄(Corporate

9) 이재승(2016: 145-179)은 세월호 참사를 이러한 관점에서 논의한다.

10) 전직 경찰과 특전사 출신을 사원을 채용하여 노조를 파괴하는 갑을오토텍의 시도에 대해서는 김상은, 2015: 28-45; 현

Crime)(성봉근, 2016: 71 참조)는 “반헌법적 행위”다. 서울지방법원은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삼성전자·삼성전자서비스의 임직원들과 협력업체의 대표들’(피고인들)이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노조 와해 전략을 수립한 후 이를 실행한 사건에 대해 그 죄책에 상응하게 처벌함으로써 자기 점검 및 통제의 계기로 삼고 향후 이와 같은 반헌법적인 행위가 다시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¹¹⁾ 피고인에는 정보 경찰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국가권력과 결합하여 인권을 증대하게 침해하는 경우는 기업의 노조파괴범죄 또한 국가범죄의 일종으로 다루어야 한다. 기업에 대해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본질적인 부분으로서의 단결권을 국가권력을 동원하여 사적(私的)으로 이용했기 때문이다.

3. 피해자의 권리

유엔 총회는 1985년 <권력범죄와 남용의 피해자를 위한 정의의 기본원칙 선언>과 2006년 <국제인권법의 총체적 위반과 국제인도법의 심각한 위반의 피해자의 구제와 손해배상에 대한 권리에 관한 기본원칙과 가이드라인>을 결의했다. 경제사회이사회 산하 유엔인권위원회(Commission on Human Rights)는 1997년 <불처벌투쟁원칙>과 2005년 <증보불처벌투쟁원칙>을 채택했다. 2006년 유엔총회가 결의한 문서는 ‘피해자 권리장전(international bill of rights of victims)’으로 부른다. 이러한 원칙들은 그 자체로 구속적인 국제법이 아니지만 여타 국제기구나 개별국가기구뿐만 아니라 비정부기구와 인권운동가들에게도 과거청산의 권고적이고 강령적인 기준으로 원용된다(이재승, 2019: 73-74).

<피해자 권리장전>은 재판받을 권리(right to justice), 손해배상의 권리(right to reparation), 진실을 알권리(right to know)를 피해자 권리의 세 축으로 제시한다(이재승, 2019: 91). 이 중 재판받을 권리는 좁은 의미의 법원에서 재판받을 권리뿐만 인권침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입법적 절차적 수단까지 포함한다(이재승, 2019: 94). 명예 회복 내용을 포함한다. 시효규정의 적용 여부는 범죄의 심각성에 달려 있다.

손해배상의 수단으로 원상회복(restitution), 금전배상(compensation), 재활(rehabilitation), 만족(satisfaction), 재발방지의 보증(guarantee of non-repetition)이 있다. 원상회복에는 해고에 대한 회복적 조치로서 고용회복이 있다(이재승, 2019: 97). 원상회복이 불가능할 때에는 금전배상을 시행하는 것이 일반적인 법원칙이다(이재승, 2019: 97). 재발방지 보증은 기업들에게 행동강령과 윤리규범, 특히 국제적 기준을 준수하도록 촉진할 것을 포함한다(이재승, 2019: 97). 재발방지의 보증은 국가폭력의 구조적 원인에 대한 진단과 처방이다. 인권친화적인 구조와 제도, 환경과 의식이 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군대, 경찰, 보안기구, 사법부, 언론기관 등은 민간인 학살까지 시행하고 두둔하고 은폐하는 수단이 되었다(이재승, 2019: 100).

대자동차의 유성기업 노조파괴공작에 대해서는 김차관, 2016: 66-72 참조.

1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2. 17. 선고 2018고합557,704,756,828,918,926,927,1025,1045, 2019고합20,442(모두 병합) 판결: 방강수, 2020: 91 재인용.

III. 어떤 헌법적 책임을 누구에게 어떻게 지울 것인가?

1. 한진중공업의 책임

2020년 10월 26일 고용노동부 국정감사 참고인으로 출석한 김진숙 지도위원은 “해고노동자 1명의 복직 문제에 국회까지 나서게 된 것에 대해 통탄스럽다고 생각한다. 한진중공업의 역사는 늘 그래왔다. 노사 화합보다는 탄압을 선택했고 그로 인해 많은 이들이 죽었고 해고당했다. 그 역사가 2020년까지 이어지는 것에 대해 답답하다”며 “이 자리에서라도 복직 문제의 물꼬 트길 바란다. 35년 동안 외면당해왔던 사람이 국민의 대표들이 모인 자리에서 간곡하게 호소한다”고 말했다.¹²⁾

한진중공업 대표이사의 형법상 배임죄 주장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다. 형법상 배임죄는 ①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②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서 ③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④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성립한다. 여기에서 문제는 ②와 ④가 문제다. 헌법의 기본적 인권은 국가 아닌 사인(私人)인 기업에게도 간접적 효력이 있고, 노동권은 기업에게 직접 효력이 있다는 견해도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23조는 기업에 대해 해고 등을 제한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의 준수는 기업경영자의 임무에 속하며, 근로기준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 오히려 그 임무에 위배한다. 기업에 손해를 가한다는 것도 손해는 위법 또는 불법 행위에 기인한 것인데, 부당해고에 대한 원직복직과 해고기간 중 임금상당액 지급은 오히려 위법 또는 불법의 교정으로써 적법한 행위다.¹³⁾

미국법상 ‘경영판단의원칙’이란 이사가 권한 내의 경영사항에 관하여 합리적인 정보에 근거하여, 이해관계 없이, 그리고 성실하게 회사에 최선의 이익이라고 생각되는 방법으로 판단하고 수행한 행위는 결과적으로 회사에 손해를 입히더라도 사기, 위법, 이익충돌이 없는 한 법원은 그 이사의 경영판단과 행위에 간섭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의미한다(조국, 2007: 167). 다만, 한국의 경우 정경유착, 총수의 제왕적·독단적 경영, 부당거래와 분식회계, 불법적인 비자금 조성 등에 대해서 업무상 배임죄를 적극 적용할 필요가 있을 뿐이다(조국, 2007: 175 참조).

회사가 법적으로 지급의무가 없는 금전을 지출한다는 이유만으로 배임죄가 성립하는 것은 전혀 아니다. 여러 사정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 지출했다면 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진중공업이 김진숙 지도위원의 문제에 대하여 회사가 처한 여러 사회적 환경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 금전보상을 포함한 복직에 합의한다면, 그것이 배임행위가 된다고 볼 수 없다. 오히려 한진중공업은 금전보상과 복직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기업의 사회적 이미지를 높이는 일이다. 윤리경영의

12) Redian 2020. 10. 26. 한진중공업의 투쟁에 대해서는 천연옥, 2010: 36-45; 윤석범, 2013: 25-41 참조.

13) 오히려 2020년 10월 26일 국정감사에서 김진숙 지도위원이 지적한 대로 “한진중공업이 2011년도에 400명을 정리하고 하면서 그 다음날 임원의 임금을 인상을 했다. 조남호 회장은 주식 배당금 174억 챙기고, 희망버스 온 이후에 담장을 높이고 CCTV 설치에 해고노동자 연봉의 2배를 썼다”면, 이것이야말로 일반인의 상식선에서는 업무상 배임일 것이다.

실천에서도 한진중공업은 제반 법 규정과 절차 등 원칙을 준수하고 정직하고 정당한 방법으로 업무를 수행하며, 모든 임직원을 존중함으로써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약속하고 있다.¹⁴⁾

한진중공업이 ‘뉴턴(New Turn)’을 새로운 가치관으로 설정하고 미래를 선도하려 한다면, 그리고 목표를 “공정한 평가와 충분한 보상이 있는 회사”로서 “소통과 화합으로 직원이 즐겁게 일하는 회사”를 둔다면,¹⁵⁾ ‘뉴턴’의 계기는 김진숙의 복직과 금전보상이다. 지금 시점에서 김진숙은 정년을 넘겼지만, 김진숙의 명예를 회복하는 방안으로서 복직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복직의 형태와 방법은 다양한 가능성을 놓고 논의한다면 충분히 합의할 수 있을 것이다. 다소 늦기는 했지만, 결자해지 차원에서 한진중공업이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이 방안이 가장 바람직한 해법이라고 생각한다.

2. 산업은행의 책임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산업의 개발·육성, 사회기반시설의 확충, 지역개발, 금융시장 안정 및 그 밖에 지속가능한 성장 촉진 등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관리하는(법 제1조) 국책은행이다. 업무는 자금 공급인데, 그 대상 중에는 신성장동력산업 육성과 지속가능한 성장 촉진 등 금융산업 및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자금의 공급이 필요한 분야다(법 제18조제1항8호). 산업은행은 2016년부터 한진중공업 경영에 관여했음에도 재무 악화를 방지하지 못했다.¹⁶⁾

법 제41조에 따라 한국산업은행 및 그 임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경우에는 그 결과에 대하여 이 법, 「감사원법」 또는 「은행법」 등 금융관계법령에 따른 징계·문책 또는 그 요구를 하지 않는 등 그 책임을 면제한다. 김진숙 지도위원의 복직 등에 대해 이동걸 KDB산업은행 회장은 적극행정의 의무가 있다. ‘기업이 알아서 할 일이고 경영에 개입하지 않으며, 권한도 방법도 없다’라는 식의 접근은 무책임하다.¹⁷⁾

반면 그는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한 쌍용자동차에 대해서는 12일 오후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신규자금 지원 조건으로 단체협약 연장과 흑자 전환까지 정의행위 금지 등을 제시했다. 노동계는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권리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¹⁸⁾ 헌법 제10조제2문의 공공기관의 기본적 인권 보장 의무를 위배한 것이다. 지금이라도 노사균형

14) 한진중공업 홈페이지의 윤리경영, <<https://www.hanjinsc.com/sustainable/ethics.asp>>, 검색일: 2021. 1. 19.

15) 한진중공업 홈페이지의 가치관경영, <<https://www.hanjinsc.com/sustainable/values.asp>>, 검색일: 2021. 1. 19.

16) 아주경제 2020. 12. 1. <<https://www.ajunews.com/view/20201130160430033>>, 검색일: 2021. 1. 19.

17) Redian 2020. 1. 13. <<http://www.redian.org/archive/149443>>, 검색일: 2021. 1. 19.

18) 그는 “흑자가 나오기 전에 일체의 정의행위 중단하겠다는 각서를 제출해달라”며 “단체협약도 1년 단위에서 3년 단위로 늘려서 계약해달라”는 요구 조건을 내걸었다. “구조조정 기업이 정상화되고 흑자를 내기 전에 매년 노사협상 한다고 파업하고, 생산 차질이 생기고 그 결과 자해행위가 이뤄지는 걸 많이 봤다. 이런 일은 앞으로 용납할 수 없다”며 “두 가지 조건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산업은행은 단돈 1원도 지원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기회에 투자가 성사된다고 해도 성사된 투자가 다시 부실화되면 그것으로 쌍용차는 끝난다는 점을 쌍용차 노사는 명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주경제 2020. 12. 1.

관점에서 한진중공업의 노동자 김진숙에 대한 명예로운 복직과 정년퇴임의 자리를 마련하고 부당하고 기간 동안의 금전보상 조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3. 정부의 책임

2020년 10월 26일 국정감사에서 임종성 민주당 의원이 정부의 책임을 언급하자 이재갑 당시 고용노동부 장관은 “원만히 해결돼야 한다는 생각은 한다”면서도 “기본적으로 해고자 복직 문제는 노사가 자율 결정할 사안이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와 논의하며 노사 원만히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다.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은 “매각을 앞둔 한진중공업의 노사가 이 문제를 원만히 푸는 것이 좋겠다. 대표이사가 안 된다고 말하면 안 되는 일인 것이고, 된다고 생각하면 풀 수 있는 문제”라며 “여야 모두가 김진숙 지도위원을 아름다운 노동자로 보내드리자. 여야가 그렇게 해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기관 간에 서로 또는 국회에만 책임을 미루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근로자·사용자 등 경제·사회 주체 및 정부가 신뢰와 협조를 바탕으로 고용노동 정책 및 이와 관련된 경제·사회 정책 등을 협의하고, 대통령의 자문 요청에 응하기 위하여 설치한 기구다(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제1조). 집행권을 갖춘 기구는 아니지만,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제도·의식(意識) 및 관행의 개선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므로(법 제3조제2항2호) 노사관계에서 공권력의 편파적 행사 또는 기업의 노조파괴 행위 등에 대해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는 기구다.

2020년 10월 26일 국회 환노위의 특별결의안은 그 자리에 출석한 정부 대표인 경사노위 위원장 문성현에게 빠른 해결의 주체로 나서도록 촉구했다. 그러나 문성현 위원장 또한 부당하고 기간 동안 임금산정이 ‘업무상 배임’이라는 논리로 발뺌했다.¹⁹⁾

경제사회노동위원회와 고용노동부는 이제라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정부조직법」 제40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근로조건의 기준, 근로자의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과 그 밖에 고용과 노동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두 기관은 한진중공업 및 산업은행과 협의하여 한진중공업의 노동자 김진숙에 대한 명예로운 복직과 정년퇴임의 자리를 마련하고 부당하고 기간 동안의 금전보상 조치가 이뤄지도록 조정하고 중재하는 역할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19) Redian 2020. 10. 26.

4. 국회의 책임

국회가 입법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시간이 오래 걸린다. 지금은 정치력을 발휘해야 할 때다. 그동안 현저하게 기울었던 노사 간 균형을 맞추기 위해 국회도 나서야 한다. 노조파괴 관련 국정조사를 통하여 관련 공무원과 기업을 처벌 등 문책할 수 있는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 노동위원회를 비롯한 기관들에서 내려지는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 판정이 노동자의 기본적 인권 관점에서 이뤄지고, 그 판정결과를 이행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적폐청산에서 국회가 해야 할 역할이 가장 크다. 적폐청산의 대상은 특정 주체를 대상으로 하기도 하지만 자본 또는 기업 편향적인 법제와 관행이다. 따라서 법제와 관행을 노동자의 기본적 인권을 중심에 놓고 노사관계를 재편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 과제는 개별 법률의 문제가 아니라 노동법제 전반에 걸쳐 있고, 한시적인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장기적으로 조사와 연구 그리고 입법안을 마련해야 한다.

노동자 김진숙에 대한 탄압사건도 오랜 시간 동안 축적한 결과다. 개별 사건의 해결도 중요하지만, 노동법제를 넘어서는 재발 방지 입법의 과제가 있다. 몇 가지만 언급하면 다음과 같다.

가.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전두환·노태우의 군사상 반란을 처벌하는 것을 계기로 제정한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는 헌정질서 파괴범죄를 형법 제2편제1장 내란의 죄, 제2장 외환의 죄와 「군형법」 제2편제1장 반란의 죄, 제2장 이적(利敵)의 죄에 한정하고 있다. 여기에 형법 제250조의 죄로서 「집단살해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에 규정된 집단살해에 해당하는 범죄를 더하여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학계에서는 ‘반인권적 국가범죄’(state crimes against human rights)라는 새로운 개념을 제시하고 있다. 조국(2002: 5)은 국가기관 또는 그 구성원이 직무를 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공권력을 행사해서 국민의 살해 또는 고문하는 등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국민의 인권을 중대하고 명백하게 침해하거나 이 침해행위를 조직적으로 은폐·조작한 행위라고 반인권적 국가범죄를 정의한다.²⁰⁾

국제법상의 ‘반인도적 범죄’의 개념을 국내법으로 수용함과 아울러 각종 국가범죄 유형에 대해서도 적절한 단죄와 함께 피해자의 구제가 요청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가담한 개인과 기업 등 법인에 대해서도 일정한 요건 아래 이 법을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20) 이호중, 2006: 105-129; 문봉규, 2011: 431-452; 문봉규, 2014: 283-296 참조. 조국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전면 부정하는 중대한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해서 공소시효를 정지·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오마이뉴스 2002. 3. 22.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069933>, 검색일: 2021. 1. 19.).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경우 가해자의 처벌뿐 아니라 피해자의 인권침해를 구제하는 한편 피해자로서의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 또한 포함해야 한다. 국가범죄로 인한 인권피해자의 유형은 다양할 뿐 아니라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하는 방법 또한 다양하기 때문에 별도의 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당장 입법하기가 쉽지는 않으므로 현행법의 개정을 통해 그 효과를 확보하는 것이 적절하다.

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

과거사정리법 제34조에 따르면, “국가는 진실규명사건 피해자의 피해 및 명예의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해자의 권리에 관한 규정이 누락되었다. 반면, 이어지는 문구는 “가해자에 대하여 적절한 법적·정치적 화해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국민 화해와 통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다. 물론 법 제36조(피해 및 명예회복)제1항에서 “정부는 규명된 진실에 따라 희생자,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 및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와 달리 정부는 행정부를 의미하는 것이어서 국회와 법원 등에 대해서는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 의무가 없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동안 과거청산 과정에서 입법에 의한 해결방안이 아니라 사법적 해결방안을 취함으로써 피해구제 관련 일관성이 없었을 뿐 아니라 피해당사자에게 소송 진행 등 여러모로 부담을 전가하는 결과가 되었다. 따라서 정부 차원에서는 피해자의 회복적 정의를 위한 전담 집행부서를 설치하고, 반인권적 국가범죄 관련해서는 관련 기업에 대해서는 일정한 피해자 구제조치가 가능하도록 하는 규정이 필요하다.

다.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의원영의원 대표발의)

2020년 12월 29일 양의원영의원 등 16인은 의안번호 6995호로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제5조의4에 제4항을 신설하여 “제1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기관의 장은 관련자에 대하여 제7조에 따른 보상금 외에 보상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는 것이다. 동조제1항은 “위원회는 관련자가 희망하는 경우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용자에게 해직된 관련자의 복직을 권고할 수 있다.”는 조항이다.

문제는 보상이 아니라 복직이다. 김진숙도 2020년 10월 26일 고용노동부 국정감사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이병모 한진중공업 대표이사에게 “한 노동자가 정문 앞에 매달리고 보자기에 씌워진 채 끌려갔고, 저는 그 후로 그 공장을 여전히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라며 “정년 두 달 남은 사람이 복직한다고 회사 말아 먹겠다. 회사에 가서 동료들과 밥 한 끼 먹겠다는 그 소원이 그렇게 어렵나.”라며 복직을 촉구했다.²¹⁾

21) Redian 2020. 10. 26.

따라서 법 제5조의4제3항을, “제1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기관의 장은 해직된 자를 복직시켜야 한다.”라고 개정해야 한다. 같은 조 제4항의 경우 “제1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기관의 장은 관련자를 복직시킬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적절한 조치와 함께 제7조에 따른 보상금과 별도의 보상을 해야 한다.”라고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표 1〉 민주화보상법 개정법률안의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의4(복직의 권고 등) ① ~ ② (생략) ③ 제1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기관의 장은 권고사항을 존중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제5조의4(복직의 권고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기관의 장은 해직된 자를 복직시켜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기관의 장은 관련자를 복직시킬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적절한 조치와 함께 제7조에 따른 보상금과 별도의 보상을 해야 한다.

IV. 몇 가지 구체적 대응 방법 검토

노동자 김진숙에 대한 해법의 열쇠는 한진중공업에 있다. 헌법적 책임을 자각하게 하는 간접적인 방법으로서 몇 가지를 검토했다.

1.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따른 진실규명 신청

과거사정리법 제2조 진실규명의 범위에는 ‘1945년 8월 15일부터 권위주의 통치시까지 헌정질서 파괴행위 등 위법 또는 현저히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사망·상해·실종사건, 그 밖에 중대한 인권침해사건과 조작의혹사건’(같은 조 제1항제4호)이 포함된다.

김진숙의 부당해고 주장의 시작은 1986년 5월 20일부터 7월 2일까지 모두 3차례에 걸쳐 당시 부산직할시 경찰국 대공분실에 연행되어 조사를 받은 것에서 시작한다. 반면 한진중공업 이병모 대표이사는 “노동운동을 했던 분이 어려운 상황인 것은 가슴 아프고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서도 “1986년에 일주일간 무단결근으로 해고가 된 것이고 이 부분은 중노위와 지노위 판결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김 지도위원의 해고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다.²²⁾

22) Redian 2020. 10. 26.

1986년은 현행 헌법으로 개정되기 이전의 시기이므로 일단 법 문언상의 권위주의 통치시기라고 볼 수 있다.²³⁾ 침해된 인권의 범주 관련해서 주로 고문 또는 가혹행위를 대상으로 한다. 노동사건의 경우 노동권을 침해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행위가 일어난 경우에 반인권범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²⁴⁾(문봉규, 2014: 286).

노동자 김진숙에 대한 탄압 사건은 노조파괴라는 권위주의정권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의 일환 아닌가 하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다. 개별 사건이 아니라 정권 차원의 인권침해 사건으로 접근할 수 있다. 이명박 정권 때의 국가정보원이 저지른 노조파괴 공작이 대규모로 이뤄진 것을 보면 충분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는 내용이다.

2.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2020년 10월 26일 국정감사에서 양의원영 민주당 의원은 이병모 대표이사에게 “86년 이후 부당해고 됐던 9명의 노동자 전원이 다 복직할 당시 김진숙 지도위원만 빼다는 조건을 달았다. 그 이후에도 (한진중공업 측은) ‘생계비 줄 테니 직장으로 오지 마라’라고 했다. 2010년 400명 해고하기로 했을 때에도 한진중공업은 단 한 명, 김진숙 지도위원만 복직에서 제외했다”고 지적했다.²⁵⁾

「국가인권위원회」 제30조제1항에 따르면, 법인·단체 또는 사인(私人)으로부터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당한 사람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구제조치는 권고적 효력에 그치지만(법 제44조), 한진중공업 또는 산업은행에 대해 인권적 조치를 하도록 요구하는 효과가 있다.

또한 조정위원회의 조정 절차를 시작할 수 있다(법 제42조제1항).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는 “원상회복, 손해배상, 그 밖에 필요한 구제조치”를 포함할 수 있으며(법 제42조제4항2호), 쉽지는 않겠지만 일정한 경우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확보할 수도 있다(법 제43조).

23) 해석상 논란이 있다(문봉규, 2014: 286). 위원회의 경우 1991년 발생한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을 2006년 4월 25일 조사개시하여 2007년 11월 13일 진실규명으로 결정했다. 헌법개정이나 정권 시기를 기준으로 하기보다는 인권침해의 중대·명백성과 그 규모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이 적절하다.

24) 한일도루코 노조 탄압사건(1980년 8월 ‘노동조합정화조치’에 의해 1980년 12월 합수부 수사관들에 의해 연행되어 육군 본부 지하 병커에 20여 일간 불법감금된 상태에서 사표쓸 것을 강요당하고 고문 및 폭행 등의 가혹행위를 당하였으며, 이기창 노조지부장 직무대리는 삼청교육대에 입소하는 등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해 노조활동이 탄압당하고, 심각한 인권침해를 당하였다며 진실규명을 신청한 사건이다.

25) Redian 2020. 10. 26.

3. 헌법소원심판 청구

헌법재판소에 산업은행과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행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 다만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경우 그 성격상 공권력을 행사할 권한 자체가 존재한다고, 또한 김진숙 지도위원 사안에서 적극적인 행정작용의 의무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아예 아무런 움직임도 없었다는 점에서 행정부작위의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위원회의 존재 이유를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4. 산업은행과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대한 감사 청구

「감사원법」 제24조에 따른 감사원의 감찰 사항에는 「정부조직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행정기관의 사무와 그에 소속한 공무원의 직무와 제22조제1항제3호(한국은행의 회계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법인의 회계) 및 제23조제7호(「민법」 또는 「상법」 외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되고 그 임원의 전부 또는 일부나 대표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임명되거나 임명 승인되는 단체 등의 회계)에 규정된 자의 사무와 그에 소속한 임원 및 감사원의 검사대상이 되는 회계사무와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이 있는 직원의 직무가 포함된다. 산업은행장과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은 이에 해당한다.

산업은행장과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은 김진숙에 대한 복직과 금전보상에 대해 업무상 배임을 이유로 해결 노력을 하지 않았다. 노동자의 인권 보호 차원에서 그들의 행위가 적정한 것이었는지 감사를 청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법 제34조의3은 적극행정의 면책에 대하여 “감사원 감사를 받는 사람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그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징계 요구 또는 문책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산업은행장과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은 적극행정의 의무를 도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적극행정을 게을리한 책임이 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72조에 따라 19세 이상의 국민은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인하여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수 이상의 국민의 연서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V. 시민의 헌법적 책임

노동자의 죽음에 무감각한 정부와 국가 그리고 기업(자본)이다. 한국 헌정사에서 노동자 인권에 대한 탄압은 대규모였고 내재 누적되었으며 노동자의 피땀을 통해 양적인 측면에서 국민경제의 발전을 이뤘다. 노동자가 흘린 피땀은 정당한 대가 없이 강요당하고 빼앗긴 것으로서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경제성장은 부정의(不正義)한 것이었다. 지금도 달라지지 않았고 그럴 기미가 잘 보이지 않는다. 견고하게 장벽이 쌓여가고 있다.

그런데 노동자 탄압에 직접 관여하지 않은 보통사람들은 아무런 책임이 없을까? 그렇지 않다. 나는 내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이유로 대한민국 이름으로 행한 부정의하고 부당한 행위의 결과를 감당해야 한다. 내가 국가의 법질서를 준수하고 국가 질서를 통해 나의 생존을 유지하고 있다면, 정치적 죄는 내가 바로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지위에 있다. 정치적 책임(Haftung)이다 (Jaspers, 2014: 85-86 참고). 공민이라면 누구나 자신의 국가가 행하거나 수인한 바에 대해 공동의 책임을 져야 한다. 노동자를 탄압하는 나라라는 범죄국가 또는 국가범죄라는 오명은 나를 포함한 대한민국 국민 전체의 부담이다(Jaspers, 2014: 116 참고).

노동자 김진숙에 대한 탄압에 사죄하기는커녕 복직도 없이 문밖에서 금전보상도 없이 직장을 떠나게 하는 것은 한진중공업의 죄이자 모든 대한민국 기업의 죄인 동시에 대한민국의 헌법적 죄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시민들이 함께 감당해야 할 책임이기도 하다. 김진숙의 복직과 금전보상은 불의에 항거한 노동자 김진숙의 명예를 회복하는 최소한의 정의다. 민주시민이 한국 사회의 부정의에 대한 정치적 죄책을 스스로 사면하기 위해 노동자 김진숙과 함께 헌법적 정의를 찾아 떠나는 장정의 시작이다.

〈참고문헌〉

- 권혜령(2020). 신자유주의 시대 구조적 폭력의 한 양상: 2000년대 이후 노동법제의 변화와 노동기본권의 위기를 중심으로. 사회법연구 41. 한국사회법학회. 2020. 8. 71-110.
- 기획단(김진숙 희망버스 기획단)(2020a). “[기자회견 자료] ‘김진숙 복직 드라이브스루 부산’ 12·19 희망차 발표”. 청와대 앞 광장. 2020. 12. 14.
- 기획단(김진숙 희망버스 기획단)(2020b). “[보도자료] 한진중공업 김진숙 복직 촉구 단식돌입 등 청와대 행동 발표 기자회견”. 2020. 12. 22.
- 기획단(김진숙 희망버스 기획단)(2020c). “[보도자료] 연재 중대재해법 제정과 김진숙 복직을 촉구하는 사회원로 기자회견”. 2020. 12. 28.
- 김상은(2015). 현장투쟁과 검경압박을 중심에 둔 갑을오토텍 노조파괴 분쇄투쟁. 정세와노동 115. 노동사회과학연구소. 2015. 9. 28-45.
- 김정주(2007). 1970년대 경제적 동원기제의 형성과 기원: 한국사회는 박정희체제를 어떻게 넘어설 것인가? 역사비평. 2007. 11. 285-309.
- 김차곤(2016). 현대자동차는 유성기업 노조파괴공작에 어떻게 개입하였나. 정세와노동 124. 노동사회과학연구소. 2016. 6. 66-72.
- 김한균(2017). 국가범죄와 과거사 청산 완결의 과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 방향. 형사정책연구 28(1). 171-203.
- 노동법률단체²⁶⁾(2020). “[보도자료] 한진중공업 김진숙 해고자 복직 촉구 노동법률단체 기자회견”. 2020. 12. 10.
- 문봉규(2011). 공무원의 반인권적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연장·배제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 32.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1. 5. 431-452.
- 문봉규(2014). 반인권적 범죄의 법적 성질에 관한 연구. 외법논집 38(1).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2. 283-296.
- 방강수(2020). 노조 와해 전략은 반(反)헌법적 행위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2. 17. 선고 2018고합557,704,756,828,918,926,927,1025,1045, 2019고합20,442(모두 병합) 판결. 노동판례리뷰 2020 4월호. 91-93.
- 보상심의위원회(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2009). “민주화운동 관련자 인정통지서”. 보상심의위 제4378호. 2009. 11. 2.

26)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법률원(민주노총·금속노조·공공운수노조·서비스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 부산시의회(2020). “투명하고 공정한 한진중공업 매각 촉구 결의안”. 2020. 9. 9.
- 성봉근(2016). 기업의 헌법상 지위변화와 기업 활동의 자유와 한계. 유럽헌법연구 21. 2016. 8. 289-342.
- 연석회의(노동자 김진숙의 명예회복과 복직을 위한 노동시민종교인 연석회의)(2021). “[보도자료] 노동자 김진숙의 명예회복과 복직을 위한 긴급 기자회견”. 청와대 앞 광장. 2021. 1. 5.
- 윤석범(2013). 한진중공업 열사투쟁과 우리의 과제. 정세와노동 88. 노동사회과학연구소. 2013. 3. 25-41.
- 이재승(1999). 쿠데타의 법리. 민주법학 16. 민주주의법학연구회. 195-225.
- 이재승(2009). 판례분석: 다시 리바이어던의 뱃속으로 - 조용수 사건의 재심판결(2007재고합10). 민주법학 39. 민주주의법학연구회. 2009. 3. 209-236.
- 이재승(2016). 세월호 참사와 피해자의 인권. 민주법학 60. 민주주의법학연구회. 2016. 3. 145-179.
- 이재승(2019). ‘피해자 권리장전’에 비추어 본 거창사건. 일감법학 42.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19. 2. 71-108.
- 이호중(2006).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배제와 소급효. 민주법학 30. 민주주의법학연구회. 2006. 3. 105-129.
- 인수범(1996). 김영삼 정부의 노동정책과 자본의 노동통제 전략: 평가와 전망. 노동사회 5. 한국노동사회연구소. 1996. 1. 42-53.
- 조국(2002).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의 정지·배제와 소급효금지의 원칙. 형사법연구 17. 한국형사법학회. 2002. 6. 1-18.
- 조국(2007). 기업범죄 통제에 있어서 형법의 역할과 한계: 업무상 배임죄 배제론에 대한 응답. 형사법연구 19(3). 한국형사법학회. 163-194.
- 천연옥(2010).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반대투쟁이 남긴 과제. 정세와노동 55. 노동사회과학연구소. 2010. 3. 36-45.
- Jaspers, Karl(야스퍼스, 카를)(2014). 이재승 옮김. 죄의 문제: 시민의 정치적 책임. 앨피. 2014. 11.

노동자 김진숙 명예회복 및 복직을 위한 긴급 국회토론회

토론 1

김진숙 복직과 보상은 정부와 자본의 최소한의 책무

김소연

비정규노동자쉼터 꿀잠 운영위원장. 리멤버 희망버스 운영팀장

김진숙 복직과 보상은 정부와 자본의 최소한의 책무

김소연 비정규노동자쉼터 꿀잠 운영위원장. 리멤버 희망버스 운영팀장

얼마 전 신문 기사를 통해 사측이 밝힌 김진숙 지도위원의 해고사유는 ‘무단결근’이었습니다. 과거 군부독재 시기 노동조합 활동을 하는 노동자들에게 들쭉운 해고사유는 위장취업, 업무방해, 폭행, 불법파업 등이었습니다. 언론보도를 접한 국민들은 김진숙이라는 사람은 불성실한 노동자나 노조를 이유로 특혜를 누리는 인물이었구나 하는 생각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입니다. 노동자 김진숙은 노동자로서의 당연한 헌법적 권리인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비인간적인 근무조건에 대하여 노동조합 집행부에 문제를 제기하며 선전물을 배포했다는 이유로 회사도 아닌 국가 경찰에 의해 대공 분실로 연행되어 갔습니다. 누가 선전물을 썼는가, 누가 배포하자 했는가 물으며 고문 폭행했습니다. 대의원을 사퇴하라, 회사를 퇴사하라고 경찰이 강요하고 회유했습니다. 이후 회사는 경찰에 연행되어 대공분실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위험인물로 노동자 김진숙을 탄압하며 업무배제를 하고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습니다. 몇 차례의 부서이동에도 꿈쩍않자 급기야 경찰과 회사 간부가 김진숙 지도위원의 집으로 몰려와 출근하지 못하게 집에 감금을 하고선 무단결근이라는 이름으로 해고했습니다.

과거 대한민국 사회는 국가 공권력과 자본을 떼어 놓고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한 몸으로 위법하게 부정결탁한 공권력과 자본에 의해 김진숙은 해고를 당해 35년간 고통받아 왔습니다. 이런 부당한 공권력과 기업의 탄압 속에서도 헌법에 보장된 민주노조를 지키기 위해 있는 힘을 다해 투쟁해 온 노동자 김진숙의 35년에 이르는 투쟁은 한국 역사를 자랑스럽게 만든 어떤 민주주의 투쟁보다 고통스러웠고, 가혹하고 지난했습니다.

1997년 정리해고와 파견법이 도입된 이후 노동자드라 노동조합에 대한 가장 큰 탄압의 무기는 정리해고, 계약해지였습니다. 근래도 그렇습니다. 아시아나케이오 노동자들은 회사가 시키는 대로 기한이 없는 무급휴직을 받지 않았다고 정리해고 당했고, 엘지트윈타워 청소노동자들이 회사의 갑질과 횡포, 저임금에 맞서 노동조합을 결성하자 업체 계약해지 방식으로 모두 해고되었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노동자들은 매일 해고에 직면해 있습니다. 아무런 잘못도 없이 정당한 권리를 요구했다는 이유만으로 거리로 내쫓기고 있는 것이 여전한 노동자들의 현실입니다.

이런 잘못된 역사와 굴레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노동자들을 죽음 아니면 무한정 해고의 고통에 시달리게 하는 현실에 대한 단절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우리 시대 과제 중의 하나인 적폐청산의 과정이기도 합니다. 영남대의료원 박문진 해고자의 투쟁은 우리시대 일터가 빼앗고 찢기고 쫓겨나는 일터가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고 인간의 존엄이 살아나는 일터로 변해가야 한다는 생을 건 호소였습니다, 현재 항암치료도 거부하고 복직을 위한 마지막 투쟁을 벌이고 있는 김진숙 지도위원의 요구는 개인의 이해를 넘어 과거 잘못된 역사를 청산하는 사회적 과정입니다. 부산에서 서울 청와대까지 이어지고 있는 김진숙의 행진에 전국 각지에서 거리로 내쫓긴 노동자들이 함께 걷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35년 부당해고자 김진숙 복직을 거부하고 방해하는 장애물이 김진숙을 해고한 바로 그들이라는 것이 놀랍지도 않습니다. 무단결근이어서 정당한 해고였다며 회사가 단호하게 거부한 것은 민주주의의 역사와 투쟁 그 자체입니다. 그것을 바로잡는 일을 ‘업무상 배임’ 범죄로 보는 산업은행과 이를 어쩔 수 없다는 청와대의 모습은 강제로 연행하고 물리적으로 막아선 그때 그 자본과 정권의 모습 그대로입니다.

이런 역사적 성찰을 통과하며 아주 최소한의 정의나마 회복하라는 전 사회적 요구를 거부하고 있는 현재 한진중공업 사측과 대주주들의 모습 역시 우리 사회가 민주와 인권이란 이름 앞에 얼마나 기만적인 세상인지를 보여줍니다. 35년간의 해고 기간의 고통과 삶의 단절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을 묻는 일을 다시 ‘돈’의 문제로 몰아치는 것은 역사에 대한 우리 사회의 존중이 얼마나 허약한지를 잘 보여줍니다.

우리 사회는 이미 광주항쟁에 대한 보상이나 학생지식인 중심의 민주화 보상을 통해 최소한의 역사의 정의를 바로잡으려는 시도를 해 왔습니다. 하지만 노동자 민중들의 투쟁, 민주주의 근원을 강화해온 실제의 투쟁에 대한 존중은 여전히 왜곡되어 있고, 인식하기 그지없습니다.

노동자 김진숙의 사례에서 보듯 과거 군사독재정권 시절엔 정부와 자본이 결탁해 무법적으로 노동자 민주주의 투쟁을 노골적으로 불법탄압해 왔다면, 현재는 노동자들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악법을 정부·의회가 만들고 자본이 이용하면서 더 나은 사회를 만들려는 모든 이들의 헌신과 노고, 투쟁을 외면하고 탄압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완전히 기울어진 운동장입니다.

하지만 지금 노동자 김진숙의 명예회복과 복직을 즉각 이행하라는 우리의 요구는 좀 다릅니다. 노동자들의 현실적 고통을 다 해결하진 못한다고 하더라도 역사에서 이미 판명된 고통과 고난은 해결하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마저 거절당하고 그 거절을 어쩔 수 없다는 정부의 모습은 촛불항쟁으로 어렵사리 다시 세워놓은 최소 민주주의에 대한 ‘재앙’이자, 또 다른 ‘재난상황’에 다름 아닐 것입니다.

그런 역사적 인식에 의하면 현재 은행관리사인 산업은행과 한진중공업 사측의 이해와 입장은 과거 군부독재의 연장이자, 현재도 여전히 자본독재를 꿈꾸는 반사회적 행위에 다름아닙니다. 노동자 김진숙의 부당해고 35년만을 짓밟는 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역사와 공공선을 짓밟고 짙은 먹구름을 드리우고자 하는 반공공적 행위에 다름아닙니다. 하여 결단코 ‘복직없이 정년없다’는 노동자 김진숙의 정의는 바로잡혀져야 합니다. 정부와 의회, 산업은행과 한진중공업 사측의 성찰과 반성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당연한 피해에 대한 책임과 회복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대통령과 정부는 35년전 노동자 김진숙에게 가해진 국가공권력에 의한 부당한 노동탄압과 고문 사실 등에 대해 인정하고 사과해야 합니다. 현재 한진중공업의 은행관리사인 국책은행 산업은행을 통해 그 책임에 답하는 조치를 즉각 취해야 합니다. 이런 국가의 책임과 더불어 한진중공업은 즉각 김진숙 지도위원을 복직시키고 부당해고 기간에 준하는 피해보상에 나서야 합니다. 그게 한진중공업 사측이 우리 사회 역사에 대해 더 큰 죄를 짓지 않는 아주 기본적인 책무입니다.

한 발 더 깊게 나아가 김진숙 지도위원이 청와대를 향해 걸어오며 들고 걷는 부채에 적힌 ‘반복되는 상처를 그치라’는 요구를 주목해야 합니다. 눈앞의 보이는 자본의 이해에만 충실한 행위는 언제나 비인간적이고 반역사적이었습니다. 현재도 청와대 앞에서 리멤버 희망버스 단식단들과 함께 노숙 중인 세월호의 진실, 그리고 더 이상 죽이지 말라고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외치며 굶던 청년노동자 김용균, 이한빛 등 피해자 가족들이 외치던 요구를 우리 사회는 무조건 수용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내일의 민주와 인권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노동자 김진숙 명예회복 및 복직을 위한 긴급 국회토론회

토론 2

김진숙의 복직이 갖는 의미

박래균

인권재단 사람 소장

김진숙의 복직이 갖는 의미

박래군 인권재단 사람 소장

오늘로 김진숙의 복직을 요구하는 청와대 앞 단식농성이 한 달을 넘겼다. 김진숙 씨의 행진도 20일을 넘겼다. 모두 목숨을 건 극한의 투쟁이다. 왜 이런 극한의 투쟁을 하는 것인가?

긴급하게 마련된 토론회에 두 분이 발제를 하셨다. 송경용 신부는 김진숙 복직의 사회적 의미를 잘 짚어주었고, 오동석 교수는 헌법적 의미에서부터 국제인권법적 의미까지 폭넓게 짚어주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을 이해하고 해결하는 방안으로 잘 제시된 것이라 생각하고 두 분의 발제 동의한다.

그런데 지금 당장 긴박하게 벌어지는 이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가 고민을 풀기에는 너무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방안들이라서 아쉽다. 오동석 교수가 제시한 현실적인 대응방안들은 발제자 본인도 알고 있듯이 “실효성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제시된 방안들은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꼭 시도해볼 만한 일들이다. 그런 방안들을 제쳐둘 것이 아니라 실행에 옮기고자 준비하면 좋겠다.

이런 방안에 충분히 공감하면서 지금 당장 단식이 길어지고, 암 환자인 김진숙 씨가 행진을 매일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 토론자의 생각을 제시한다.

1. 김진숙 씨의 문제는 개인의 문제도, 노사 간의 문제도 아니다.

두 분 발제자들이 적절히 지적하고 있듯이 김진숙 씨의 문제는 개인 김진숙의 문제가 아니다.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기(사실 노태우 정권 이후에도 노동권에 대한, 노동운동에 대한 탄압은 크게 달라지지 않고 지속되어 왔다)에 노동문제는 ‘공안문제’였다. 1970년 전태일 열사의 분신 이후 이 나라에서 벌어졌던 노동운동에 대해서 언제 노사 간의 자율적인 타협으로 문제 해결을 해 본 경험이 있던가. 한 회사의 노사간의 분쟁에 대해서 득달같이 공권력이 개입되고, 공권력이 투입되어 일방적으로 노동자들을 진압하기에 바빴다. 일상적으로 노동운동가와 노조는 공권력의 감시 대상이었으며, 노동조합에 대한 부당한 사측의 개입은 허용되어왔던 반면에 노동자에 대한 연대는 법적으로 처벌해왔다. 그런 시기에 발생한 문제다. 이런 점은 먼저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이 문제의 해결은 시작되어야 한다.

2. 노동조합운동을 불온하게 대해온 관행을 철폐해야 한다.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기에 벌어진 공권력에 의한 노동탄압에 대해서 바로잡으려는 의지를 이 정부가 보여줘야 한다. 이미 민주화운동명예회복보상심의위원회는 김진숙 씨를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하고, 두 차례나 복직을 권고하였다. 이는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기에 있었던 부당한 해고를 공적 기구가 인정했던 것이다. 그러므로 노사 간의 문제로 돌리려는 태도는 온당치 않다. 국가가 저지른 잘못을 국가가 책임지고 풀어야 한다. 이를 통해 과거 김진숙 씨 사례만이 아니라 국가가 공권력을 동원해 노동운동가와 노동조합을 탄압한 것에 대해 이를 인정하고 이에 대해 사과함으로써 잘못된 관행을 더는 지속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어야 한다. 이는 단지 김진숙 씨만의 문제가 아니다. 최근 단협을 체결한 유성기업의 사례에서 보듯이 한 개 사업장의 노동조합 파괴를 위해서 최근까지 정부의 여러 부처들이 결합해서 작당하고, 공권력이 동원되어 무자비하게 노동조합을 파괴하려고 했다. 노조파괴공작이 여실히 드러났음에도 법은 언제나 회사 편이었다. 이런 점들에 대해서 분명히 사과하고 바로 잡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일이 필요하다. 이것은 헌법에서 보장된 노동3권을 존중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천명하는 것이 될 것이며, ‘노동존중’을 표방한 문재인 정부의 정책 방침에도 맞는 것이다. 김진숙 씨 건에 대해서 국가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3. ‘배임’이라는 터무니없는 핑계를 벗어나야 한다.

사측이 김진숙 씨의 복직을 반대하고 이유는 무단결근이어서 해고한 것이라 정당하다는 것이다. 그것은 권위주의 정권 시기에 지노위, 중노위만이 아니라 사법부도 정치권력에 종속되어 시녀화되었던 시절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억지다. 이미 다른 사건들에서 권위주의 정권 시기의 잘못된 법집행과 사법부의 판결마저도 잘못이었음을 여러 과거사 관련 법률들과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기의 불법행위에 대한 재심판결 등에서 법리가 확실하게 정립된 바 있지 않은가. 공권력과 합작으로 회사에 출근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놓고 이를 핑계로 해고라니 어처구니없다. 또 인권적 원칙에서 인권피해를 당한 피해자에 대한 배상은 복직만이 아니라 피해자의 원상회복을 위한 물질적 배보상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배상의 원칙을 포함하고 있다. 명백한 배상의 책임을 지고 있는 회사가 배임이라는 편리한 법 논리에 숨는 것은 부정의하다. 그런 태도는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근색한 변명에 지나지 않으며, 여전히 ‘김진숙만은 안 된다’는 과거 한진 사측과 경영계의 논리의 연장일 뿐이고, 따라서 그것은 과거의 블랙리스트의 관행을 유지하겠다는 권위주의정권 시기의 노동관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것에 다를 아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시기에 김진숙 씨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치적인 해법이 동원되어야 한다. 국가의 수반인 대통령부터 과거 잘못된 국가의 노동운동에 대한 탄압에 대해서 사과하고 따라서 적극적으로 이를 풀기 위해서 나서야 한다. 국회도 입법으로 '김진숙들'의 문제를 풀기 위한 입법에 나서야 한다.

기업도 과거 국가 공권력과 유착하여 노동권을 탄압하던 관행에서 벗어나 ILO협약들을 비롯한 국제인권규약과 CSR(기업의 사회적 책임), SDGs(지속가능발전목표들)에서 제시하는 기업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를 바로잡는 일에서부터 나서야 한다. 과거의 정경유착 시대의 노동탄압으로 기업을 경영하다가 국제시장에서 고립을 자초할 것이기 때문이다. 김진숙 씨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함으로써 이 나라에 새로운 노동문화, 기업문화를 만드는 전환점으로 삼기를 바란다.

지금은 다급하게 움직여야 하는 시기다. 청와대 앞으로 행진해 올라오는 김진숙 씨와 한 달을 넘긴 단식 농성자들에게 건강상의 문제라도 생긴다면 그것은 더욱 감당하기 힘든 정치적 문제로 전화될 것임을 정부당국자가 명심하였으면 한다.

노동자 김진숙 명예회복 및 복직을 위한 긴급 국회토론회

토론 3

결자해지, 김진숙 복직은
정부와 한진중공업의 책임이다.

박승렬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 소장

결자해지, 김진숙 복직은 정부와 한진중공업의 책임이다.

박승렬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 소장

1. 김진숙 복직은 정부의 책임이다.

결자해지! 일을 만든 사람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오동석 교수의 발제는 김진숙 해고 사건의 성격을 분명하게 밝혀주었다. 그의 해고는 국가가 저지른 폭력의 결과이다. 그의 복직은 곧 과거 정권이 저지른 국가폭력을 바로 잡는 일임이 명확해졌다. 그 동안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던 원인 역시 명확해졌다. 해고의 원인 제공자인 정부가 책임을 회피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현재 문재인 정부 책임자들도 역시 김진숙의 복직문제는 노사간 문제라고 주장하면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는 과거 전두환 정권이 저질렀던 국가폭력을 용인하는 일이고 불의에 동참하는 일이다.

김진숙은 전두환 정권에서 자행한 노동 탄압의 희생자이다. 1986년 전두환 정권 시절 공안당국은 노조 대의원으로서 노동자들의 근로 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유인물을 배포했다는 이유로 온갖 폭행과 고문을 자행하였다. 뿐만 아니라 그의 출근을 저지하기 위해 경찰을 동원하여 집에 연금하였다. 그의 해고는 전두환 정권의 노동탄압 정책의 결과임이 분명해졌다. 김진숙의 해고는 정부가 직접 자행했던 국가 폭력의 결과이다.

그의 해고가 부당했음은 이명박 정권 시절에도 인정된 바 있다. 2009년,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는 김진숙의 해고를 국가의 반노동정책에 항의하였던 민주화 운동으로 인정하였으며 그의 복직을 권고하였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복직권고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국가 기관에서 부당해고로 인정하고 복직을 권고하였음에도 정부조차 그 권고를 묵살하였다. 이명박 정권 시절에나 박근혜 정권 시절에도 복직권고를 실행에 옮기려는 조치가 없었다.

문재인 정권에서는 달라졌는가? 문재인 정부에서도 실제 조치가 없다. 지금도 그의 복직을 노사간 문제라며 책임을 떠넘긴 채 수수방관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외치는 적폐 청산은 권력기관들 사이에서 권력을 재분배하는 문제만 아니다. 권력기관을 개혁하면 적폐가 청산되는가? 과거 정권시절 권력기관에 의해 피해를 당한 국가폭력의 희생자들에게 실제적 회복 조치가 이뤄질 때 비로소 적폐가 청산되는 것이다.

국가의 폭력을 바로 잡는 일에는 정년이 없어야 한다. 식민지에서 해방된지 75년이 지났어도 지금도 일제의 만행에 대해 현재의 일본 정부에게 책임있는 사과와 배상을 요구하고 있는 것처럼 국가가 개개인들에게 저지른 폭력을 바로 잡는 일에는 시한이 없어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지금이라도 과거 전두환 정권이 저지른 폭력을 바로 잡아야 할 책임이 있다. 국가 폭력의 피해자들에게 국가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것이 그 책임이다. 민주화와 적폐 청산은 구호와 주장에 담겨 있지 않다. 실제의 결과를 보여주어야 한다. 김진숙의 복직은 국가 폭력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과거 정권의 잘못을 사과하는 것은 오히려 용기있는 일이며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정부의 진정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과거 정권이 저지른 국가 폭력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용기있는 민주정부이기를 기대한다.

2. 김진숙의 복직은 한진중공업의 책임이다.

김진숙의 해고는 한진중공업(1986년 당시 대한조선공사)이 자행하였다. 그럼에도 한진중공업은 김진숙 노동자에게 그동안의 급여와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은 배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과거 자신들이 저질렀던 잘못을 전혀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국가 기관이 결정한 복직권고를 무시하는 행위이다.

김진숙을 해고한 명분은 무단결근이었다. 당시 회사는 그가 대공분실에 끌려가서 온갖 고초를 겪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김진숙에게 부당한 인사 조치를 단행한 바 있다. 회사의 부당 인사에 항의하며 출근투쟁을 하는 김진숙을 폭력으로 제압하였다. 오동석 교수의 발제문에서 보듯 그의 해고는 경찰과 회사의 합작품이었다.

한진중공업은 과거에 저질렀던 김진숙에 대한 해고의 잘못을 인정해야 한다. 김진숙의 복직은 35년 전에 저질렀던 한진중공업의 노동자 탄압 역사를 바로 잡는 일이다. 그를 복직시키는 것은 시해도 아니며 배임도 아니다. 과거의 잘못을 바로 잡는 일이다. 35년 동안 그의 복직을 거부하고 배제해왔던 오만함을 사과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

3. 김진숙의 복직은 어용화된 노동조합을 바로 잡는 일이다.

김진숙은 당시 어용노동조합의 잘못을 지적하고 노동자들의 근무환경 개선을 촉구하였다. 노동자들의 식사와 화장실을 제공할 것을 요구하는 아주 단순한 일이었다. 당시 어용화된 노조나 회사, 정부 당국은 단순한 요구조차 폭력으로 탄압하며 해고하는데 서로 협력하였다. 비인간적인 근로 조건의 개선을 요구한 노동자를 탄압하는데 협력했던 노조의 부끄러운 역사를 바로 잡는 일이다.

과거 청산은 멀리 있지 않다. 35년 동안 해고자로 살아온 김진숙을 복직하고 명예를 회복하는 일이 곧 과거 청산이다. 35년 전 국가와 회사, 노동조합이 합작하여 저질렀던 잘못을 인정하는데서 시작해야 한다. 아울러 35년 동안 그의 아픔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 사회의 부족함을 인정할 때 우리 모두의 함께 지혜를 모을 수 있다.

그의 복직과 명예회복 운동은 김진숙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다. 노동자의 존엄성을 회복하는 일이며, 과거 정권의 반노동자 정책의 희생자들을 치유하는 출발이다. 특히 그동안 우리 사회의 발전을 위해 희생을 강요당했던 노동자를 존중하는 사회로 나아가는 토대이다. 그는 해고될 당시에 그럭저럭했지만 해고 이후에도 언제나 동료 노동자들의 존엄을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살았다. 때로는 정문에서 짓밟히기도 했고 때로는 크레인에 올라가 먼저 떠난 동료들의 고통을 온 몸으로 짊어지기도 했다. 그의 투쟁과 헌신은 해고의 불안과 고통 속에 있는 수 많은 노동자들을 지켜낸 힘이었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민주주의는 그렇게 지켜졌다. 그의 헌신과 노고에 마음 깊이 감사한다. 우리 종교인들이 한 노동자의 복직 문제에 깊이 관심하고 연대하는 것은 그가 노동자들의 존엄을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살아왔기 때문이다. '너희 가운데 가장 낮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라는 성경 말씀처럼, 그는 삶의 터전에서 쫓겨나는 노동자들을 지키기 위해 온 몸으로 실천해 왔다. 우리는 그를 지지하고 함께 연대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기쁘다. 사랑의 빛진 자들이 그를 사랑하고 그를 지지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김진숙이 온 몸으로 지켜온 노동자 존중이 우리 모두의 존엄성을 지켜줄 것이다. 김진숙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해 투쟁은 곧 우리의 존엄성과 민주주의를 지킬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용단을 기대한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요15:13)

노동자 김진숙 명예회복 및 복직을 위한 긴급 국회토론회

토론 4

김진숙에 대한 국가·기업의 책임

조영선

민변 부회장. 전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

김진숙에 대한 국가·기업의 책임

조영선 민변 부회장. 전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

1. 노동자 김진숙 사건은 어떤 것인가

김진숙은 한진중공업 노동조합 대의원에 당선된 후, 1986년 2월 20일 “제23차 정기 대의원 대회를 다녀와서”라는 제목의 유인물 150여 부를 동료 노동자와 제작·배포한 이후, 같은 해 5월 20일부터 7월 2일까지 모두 3차례에 걸쳐 당시 부산 경찰국 대공분실에 연행되어 조사를 받았다. 현장노동자들과 분리하기 위해 두 번째 대공분실을 다녀온 이후에는 현장직에서 사무직으로, 세 번째 다녀온 뒤에는 직업훈련소로 배치전환되었다. 이에 김진숙은 그 시정을 요구하며 영도조선소에 출근투쟁을 했고, 이에 경찰, 회사관리자 등은 집 대문을 막아서며 출근하지 못하게 하였다. 회사는 1986. 7. 14. 재직 중 어용노조비판 및 신일금속 노사분규 개입 등을 이유로 징계해고하였고, 이후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진행했으나 패소가 확정되었다.

2009. 11. 2.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이하 민주화 위원회라 한다)는 위 회사의 해고와 상이가 민주화운동으로 인한 것임을 인정하고 회사에 복직 권고한 바 있고, 2020. 9. 다시 복직 재권고하였으나 현재까지 거부하였다. 한편, 김진숙은 2011년 한진중공업 구조조정 반대 타워크레인 고공농성(309일) 및 ‘희망버스 운동’ 전개하였다.

현재 김진숙은 회사에 복직 및 이에따르는 퇴직금 등의 지급을 요구하고 있다.

2.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는지¹⁾

가. 노사 협상의 결렬

회사측은 해고기간 동안 급여(위로금)와 퇴직금을 지급(이하 통칭하여 ‘금전보상’)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복직 합의를 하는 경우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고 협의를 거부하고 있다.

1) 2020.12.11. 민변,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주법연, 민주노총 등 법률원,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등 5개 노동법률단체 공동의견서 발췌요약

나. 업무상 배임의 법리는 무엇인지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성립하고(제355조 제2항), 업무상 배임죄는 가중처벌한다.(제356조).

형법상 배임죄의 객관적 구성요건 중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에 관하여 대법원은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률의 규정, 계약의 내용 혹은 신의칙상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 사이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라고 판시하고 있다.

특히, 대법원²⁾은 업무상 배임죄와 관련하여, ‘경영상의 판단’의 경우 배임의 고의를 쉽게 인정해서는 안 된다면서, 문제가 된 경영상의 판단을 내리게 된 경위와 동기, 판단대상인 사업의 내용, 기업이 처한 경제적 상황, 손실발생의 개연성과 이익획득의 개연성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자기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다는 인식과 본인(회사)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하의 의도적 행위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해고무효확인 소송 등에서 패소 확정된 노동자와 회사가 합의한 사례 등 최근 언론보도 등을 통해 알려진 장기분쟁 사안 관련 합의 사례만 보더라도 다음과 같다.

- 지난 2018. 7. KTX 해고 노동자들은 대법원에서 근로자 지위확인 등 청구소송에서 패소 확정 판결을 받았지만, 이후 사회적 합의로 12년 만에 정규직으로 복직하였음. 심지어 위 복직 합의 전 해고자들이 회사에 반환해야할 금전 문제와 관련하여 회사가 종교계의 중재를 받아들여 일부(5%)만을반환받는 것으로 사건이 종결되기도 하였음
- 지난 2019. 4. 국내 최장기 투쟁사업장인 콜텍 해고 노동자들이 대법원에 정리해고가 유효하다는 확정 판결을 받았지만, 복직투쟁(4464일)을 이어온 콜텍지회 조합원 25명과 합의를하였음.
- 1982년 삼성테크윈에 입사해 노조설립을 주도하다 1995년 해고된 김용희노동자가 2020.

2)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5도12633판결.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 이익을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한다. 여기서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는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률의 규정, 계약의 내용 혹은 신의칙상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 사이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 다만 기업의 경영에는 원천적으로 위험이 내재하여 있어서 경영자가 개인적인 이익을 취할 의도 없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기업의 이익을 위한다는 생각으로 신중하게 결정을 내렸더라도 예측이 빗나가 기업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까지 고의에 관한 해석기준을 완화하여 업무 상배임죄의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다. 여기서 경영상의 판단을 이유로 배임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는 문제 된 경영상의 판단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판단대상인 사업의 내용, 기업이 처한 경제적 상황, 손실발생의 개연성과 이익획득의 개연성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자기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다는 인식과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하의 의도적 행위임이 인정되는 경우인지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5. 삼성의 공식 사과, 명예복직, 피해배상을 요구하며 강남역에서 고공농성을 한 지 355일 만에 합의하였음.

-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통보로 해직됐던 전교조 전임자 34명은 2020. 9. 복직 및 최대 4년 치 임금을 지급받기로 합의하였음.

위와 같이 노사가 합의한 사안이 업무상 배임죄로 의율된 선례가 없다.

다.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는지

이 사안에서 한진중공업이 금전보상을 하며 김진숙 지도위원을 복직시킬 경우 위 대법원 판례에서 말하는 배임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살펴본다.

- 1) 합의의 동기 및 경위와 관련하여, 2009년 이후 최근까지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 부산시의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야의원 등의 수차례 복직 권고가 있었으며, 이는 경영진의 사적인 이익추구나 기타 부적절한 동기에서 추진된 것이 아님이 분명하다.
- 2) 합의 내용과 관련하여, 개별 근로자의 복직여부 및 조건 등 기업의 인사노무에 관한 것으로 원칙적으로 사용자에게 상당한 재량이 인정되는 영역으로, 현 경영진이 회사에 이익이 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면 이러한 경영상의 판단은 일응 존중되어야 할 것이다.
- 3) 기업이 처한 경제적 상황과 관련하여,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2018년 이후 자산매각 등 유동성 확보 노력으로 흑자로 전환하였고 최근까지 영업이익 기초를 유지하면서 현재 매각절차 진행 중이나, 실적개선과 추가상승, 입찰경쟁 등으로 매각대금이 당초 예상금액(5천억 원)을 뛰어넘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노동자 1인에 대한 복직합의가 기업의 경제적인 상황을 악화시킬 상황은 전혀 아니다.
- 4) 손실발생과 이익획득의 개연성에 관하여, 매각을 앞두고 조선업의 사업계속과 고용유지에 관한 지역사회의 우려, 노사갈등과 사회적 논란 내지 분쟁을 조기해소 함으로써 오히려 기업 이미지 제고 등 유·무형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
- 5) 백보양보하여, 사용자가 법적으로 지급의무가 없는 금전이라 하더라도 여러 사정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 지출했다면 경영상 판단에 따라 지급한 것은 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 회사가 자사의 사회적 이미지 제고 등의 목적으로 기부행위를 하거나 사회공헌기금을 조성하여 지출하는 경우 등도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업무상 배임에 해당할 여지는 없으며, 오히려 기업 경영 이미지에 긍정적 메시지로 작용할 수 있다.

3.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과보상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복직권고

가. 관련 규정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민주화보상법)에 의하면, “민주화운동”이란 1964년 3월 24일 이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헌법이 지향하는 이념 및 가치의 실현과 민주헌정질서의 확립에 기여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킨 활동을 말한다.

나. 민주화 운동관련자 인정의 의미

먼저, 자율적 노사관계에 경찰 등이 불법적으로 개입하여 연행하고 고문 등을 가한 것은 명백한 국가의 의한 불법행위이고, 이는 기업과의 협력하에 해고, 상이, 구속 등이 이뤄졌음이 밝혀진 것이다. 그렇다면, 국가와 기업은 불법행위에 따른 원상회복 차원의 복직과 미지급한 임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위원회가 김진숙을 ‘민주화운동관련자’로 인정한 것은 김진숙에 대한 해고, 상이 등이 불법적으로 이뤄졌음을, 특히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문란케 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행위임을 인정한 것이다. 따라서, 불법행위에 따른 원상회복, 회복적 정의차원에서 복직, 그리고 그 기간동안 받지 못한 금원을 국가와 기업이 보상 내지 배상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물론 법률 제5조의 4. 제2항에도 복직 등의 권고에 대해 기업은 ‘권고사항을 존중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할 의무를 질 뿐이지만, 민주화운동법 및 김진숙에 대한 민주화운동관련자 인정 취지 등에 비추어, 충분히 기업이 헌법과 법률의 가치를 존중한다면 마땅히 복직 등을 수용함으로써 원상회복, 회복적 정의의 길을 수용해야 할 것이다.

다. 민주화보상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한편, 오동석 교수님이 지적하신 민주화보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국가 공권력의 개입이 드러나는 부당해고의 경우에는 복직과 함께 원상회복에 준하는 손해배상을 강제할 수 있는 법률 개

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드린다.

4. 마치며

과거 경찰 대공분실(보안분실)이 관여하여 김진숙을 불법연행하고 고문을 가한 행위는 국가의 불법행위로서 국가배상의 책임을 질 것이고, 별도로 경찰 등 공권력의 개입으로 부당해고한 것이 라면 소멸시효논란은 별론으로 하고 국가와 기업이 공동 불법행위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책임을 묻는 과정, 특히 2020.12.10. 시행에 들어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기본법에 따른 원상회복은 시간과 입증을 위한 지난한 험로가 예상된다 할 것이고, 실효성을 속단할수 없다.

회사가 김진숙 지도위원을 금전보상을 하며 상징적으로 복직시키더라도, 민주화운동법 등의 취지에 따라 사용자의 의무이행의 일환으로 볼 수 있으므로 배임행위로 볼 수는 없다. 또한 민주화운동법이 과거 권위주의 정부하의 불법적 행태에 대한 반성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마땅히 이를 위한 결자해지의 자세가 필요하다.

과거사는 해결되지 않는 한 현재 진행형일 수밖에 없다. 그것이 기업과 국가공권력에 의한 것이든, 개인에 의한 것이든, 그 어느 것도 기본권침해가 있었다면 이에 따른 가해자의 처벌, 진상 규명, 명예회복, 배상 등이 따라야 하는 것은 너무 자명한 2021년 헌법이 명하는 기본질서이다.

인권위 진정, 헌법재판소 제소 등은 현장에서 의견. 끝.